

제3호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견·조·사

환경문제관련 입법 의견

1992. 10.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과 향후 예측가능한 입법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과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과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집·검토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도 직결됩니다. 보다 완전한 입법의견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0163~5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박상철

연구원 김창규

연구원 윤성승

목 차

제 1 편 환경문제관련 입법의견

| | |
|-----------------------------------|----|
| I. 문제의 소재 | 1 |
| II. 환경관련 각계의견 | 6 |
| 1. 환경보전에 관한 입법의견 | 7 |
| 2. 폐기물관리에 관한 입법의견 | 24 |
| 3. 환경피해구제에 관한 입법의견 | 30 |
| 4. 환경형법에 관한 입법의견 | 35 |
| III. 외국의 환경관련 입법례와 우리의 입법방향 | 37 |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 | |
|--------------------|----|
|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41 |
| 1. 최근입법의견 목록 | 42 |
| 2. 최근입법의견 요지 | 45 |
| II. 최신법령 목록 | 76 |

제 1 편

환경문제관련 입법의견

I. 문제의 소재

최근의 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 중 환경오염에 관한 대책이 여타의 현안문제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¹⁾ 이제는 서울과 같은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²⁾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입법은 60년대초 오물청소법(1961. 12. 30) · 공해방지법(1963. 11. 15) 등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제개발과 성장정책을 최우선시하던 당시의 정부의 정책의지와 사회경제적 분위기하에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이와 같이 소홀하고 안이한 자세는 근 20여년간 환경관련입법의 공백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에 있어서도 국제적 감각을 상실하게 하였다.

1) ◇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도

(단위 : %)

| 구 분 | 환경오염 | 물기문제 | 범죄문제 | 주택문제 | 교통문제 | 교육문제 | 정치문제 |
|----------|------|------|------|------|------|------|------|
| 전혀 관심없다 | 1.1 | 0.3 | 2.0 | 2.0 | 0.8 | 1.5 | 6.9 |
| 별로 관심없다 | 13.9 | 4.5 | 7.0 | 20.1 | 10.8 | 13.2 | 33.4 |
| 상당히 관심있다 | 56.1 | 39.5 | 43.4 | 35.7 | 41.8 | 40.8 | 33.2 |
| 매우 관심있다 | 28.9 | 55.7 | 49.1 | 41.4 | 46.6 | 44.5 | 26.6 |

(『환경오염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6, 37면에서 재인용)
대륙연구소의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1990.12) 따르면 환경보전 대책이 시급하다(총응답자 2000명 중 830명으로 41.5%로 나타남)는 지적이 있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법의식조사(1991. 4)에서도 공해사범에 관한 쳐벌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환경오염실태와 대책'(1992. 6, 41~42면)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구·광주는 소음·진동, 부산은 식수, 부천은 대기, 청주와 경남은 하천오염 등이 환경오염중 가장 큰 불만인 부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환경문제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1992. 5. 5 발효), 리우회담(The Rio Conference; UNCED, 1992. 6. 3~1992. 6. 14) 등에서 환경문제가 국가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자 우리의 기존태도에도 일대 변혁이 일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태도변화는 환경관련 입법의 추이와 행정기구의 확대에 반영되었는데 그 전개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관련법률의 입법추이〉

| 구분 | 날짜 | 공포번호 | 입법내용 | 비고 |
|---------|--------------|---------|---------------|---|
| 환경보전관련법 | 1963. 11. 15 | 법률 1436 | 공해방지법 제정 | 71. 1. 22 전면개정 |
| | 1977. 12. 31 | 법률 3078 | 환경보전법 제정 | 공해방지법 폐지, 79. 12. 28 (환경영향평가 제도입), 81. 12. 31, 86. 12. 31 개정 |
| | 1977. 12. 31 | 법률 3079 | 해양오염방지법 제정 | 91. 3. 8 전면개정 |
| | 1983. 5. 21 | 법률 3657 |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제정 | 87. 11. 28 환경관리공단법으로 명칭변경 및 개정, 89. 12. 30, 90. 8. 1, 91. 3. 8 개정 |
| | 1990. 8. 1 | 법률 4257 |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 환경보전법 폐지 |
| | | 법률 4262 |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 91. 5. 31 개정, 92. 8. 17 대기환경보전법 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 | 법률 4259 | 소음진동규제법 제정 | 92. 8. 18 소음진동법 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 | 법률 4260 | 수질환경보전법 제정 | 91. 5. 31 개정, 92. 8. 18 수질환경보전법 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 | 법률 4261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 |
| | 1991. 3. 8 | 법률 4365 | 해양오염방지법 전면개정 | |

| 구분 | 날짜 | 공포번호 | 입법 내용 | 비고 |
|-----------|--------------|---------|--------------------------|--|
| 환경보전관련법 | 1991. 12. 31 | 법률 4493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 | |
| | 1991. 12. 31 | 법률 4492 |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 |
| | 1992. 9. 9 | | 환경영향평가법안 입법예고 | |
| | 1992. 10. 5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
| 폐기물관련법 | 1961. 12. 30 | 법률 914 | 오물청소법 제정 | |
| | 1979. 12. 28 | 법률 3182 |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정 | 1989. 12. 30, 1991. 3. 8 개정 |
| | 1986. 12. 31 | 법률 3904 | 폐기물관리법 제정 | 오물청소법 폐지 |
| | 1991. 3. 8 | 법률 4363 |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 | |
| | 1991. 3. 8 | 법률 4364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정 | |
| | 1992. 7. 30 | | 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 입법예고 | |
| | 1992. 9. 1 |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입법예고 | |
| 피해구제및환경범죄 | 1990. 8. 1 | 법률 4390 |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한 고의범과 업무상파실범을 처벌 |
| | 1990. 8. 1 | 법률 4258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정 | 제246조(방사능 물질방류 관련), 제27장 환경에 관한 죄(284~287조)신설 |
| | 1992. 6. 1 | | 형법개정 법률(안) | |
| | 1992. 8. 27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정(안) 입법예고 | |

〈환경관련 행정기구의 변천과정〉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설치
(1967년 2월)



환경위생과를 차관직속의 위생관리(3급)으로 승격
(1970년 2월)



위생관리관을 위생국으로 개편,
공해과 신설 (1973년 3월)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
공해과를 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로 분리개편,
공해관리관(3급) 신설
(1975년 8월)



공해관리관을 환경관리급(2급)으로 개편
(1977년 3월)



보건사회부 외청으로서 환경청 발족
(1980년 1월 15일)



지방환경지청(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 신설
(1986년 10월)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
지방환경지청을 지방환경청으로 승격
(1990년 1월)

최근 환경오염행위가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는 '환경에 관한 죄'를 독립된 장으로 신설하고 과실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개정법률안을 최종확정(1992. 6. 1)하여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각계의 입법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법제차원의 입법정책지원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각계각층의 입법의견과 정책대안을 1)환경보전 관련의견 2)폐기물관리 관련의견 3)환경피해구제 관련의견 4)환경형법 관련의견 등으로 분류·집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 환경관련 각계의견

| | |
|--------------------------|----|
| 1. 환경보전에 관한 입법의견 | 7 |
| (1) 환경보전정책 관련의견 | |
| (가) 정부의 정책 및 입법방향 | |
| (나) 국민의 의식전환 | |
| (다) 국민의 참여보장 | |
| (2) 환경규제제도개선 관련의견 | |
| (가) 환경영향평가제도 | |
| (나) 공간영향평가제도 | |
| (다) 배출규제제도 | |
| (3) 대기보전 관련의견 | |
| (4) 수질보전 관련의견 | |
| (5) 토양보전 관련의견 | |
| (6) 해양보전 관련의견 | |
| (7) 소음·진동규제 관련의견 | |
| 2. 폐기물관리에 관한 입법의견 | 24 |
| (1) 폐기물관리정책 관련의견 | |
| (2) 폐기물관리입법 관련의견 | |
| 3. 환경피해구제에 관한 입법의견 | 30 |
| (1) 환경분쟁해결절차 관련의견 | |
| (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
| (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
| (2) 환경오염피해보상 관련의견 | |
| (가) 환경책임법의 제정 | |
| (나) 환경오염건강피해보상법의 제정 | |
| (다) 환경보험제도의 도입 | |
| (다) 기타 개선방안 | |
| 4. 환경영법에 관한 입법의견 | 35 |

1. 환경보전에 관한 입법의견

(1) 환경보전정책 관련의견

Ⓐ 정부의 정책 및 입법방향

① 정부의 의식전환

- 김귀곤(서울대 도시계획과 교수)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UN의 주도하에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내 문제를 논의하는 자세도 국제적 규제나 협약에 대한 안목을 갖고 수동적인 자세는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지구환경보존과 한국의 환경 및 경제정책』, 대화 통권7호(여름호), 1991, 34면)
- 홍욱희(한국전력기술연구원) 선진국이 제시한 환경정책이나 정보물에 의존하다 보면, 국내의 피해나 대처에는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대한 자체반성부터 하는 주체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지구환경보존과 한국의 환경 및 경제정책』, 대화 통권7호(여름호), 1991, 33면)
- 강원용(크리스챤 아카데미 원장) 그 동안 성장지향의 개발정책을 지향해 왔던 우리도 환경파괴의 공범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환경문제는 수동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구촌문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지구환경보존과 한국의 환경 및 경제정책』, 대화 통권7호(여름호), 1991, 33면)
- 강우혁(민자당 의원) 환경보전운동의 범국민적 자율운동은 민간단체를 구심점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환경타임즈 92.9.3., 4면)
- 김진석(연세대 환경공학연구소) 환경문제를 다루는 정치인들이 깊은 철학과 현실인식능력을 가져야 하며, 더불어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지구환경보존과 한국의 환경 및 경제정책』, 대화 통권7호(여름호), 1991, 33면)
- 이용수(동아일보사 부장) 정부는 단속과 규제 등 법적 제재를 맡고, 시민운동단체는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과 시민의식의 전환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시민운동단체는 각 개인의 환경가치관정립을 위해 국민홍보에 주력해야 한다.(『지구환경보존과 한국의 환경 및 경제정책』, 대화 통

권7호(여름호), 1991, 35면)

② 정부의 정책방향

- 구연창(경희대 법대 교수)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① 환경보전 지향적인 조화주의로 나가야 하고, ② 환경정책의 관심과 표적을 환경전반의 문제로 전환해야 하며, ③ 접근방법도 사전적이고 적정관리적인 접근방법에 따라야 하고, ④ 환경정책이 환경부서의 정책방향에 의존해 왔던 것을 종합적이고도 범정부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하며, ⑤ 법적규제중심적이었던 환경정책에 경제적 유인적인 측면이 보완되도록 하고, ⑥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범지구적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과 노력이 촉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⑦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기업인·공무원·개인 모두가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환경입법과 정책개선』, 한국아동·인구·개발의원연맹 주최 「환경문제에 대한 대토론회」, 1990.6.15., 93~94면)
- 이상곤(인하대 경제학 교수) 장기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①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같은 목적 아래 통합하여 인식,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가치에 대해 적절히 평가, ③ 환경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의 건설은 그 위험성을 철저히 고려, ④ 환경문제를 지구적 차원으로 이해하여 개정된 환경보존법과 보완되는 방식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과 아울러 환경행정의 일원화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환경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행정조직정비가 필요하다.(『지구환경보존과 한국의 환경 및 경제정책』, 대화 통권7호(여름호), 1991, 33면)
- 조두연(변호사) 행정 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련업무를 환경처 소관으로 통합·조정, 각종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해 환경처장관이 시정권을 행사, 환경오염측정자료의 공개와 환경영향평가시의 주민참여를 보장, 정부의 환경행정이 규제만능에서 궤적한 환경의 창조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참여자세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관계법규의 개정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91년 환경정책 이렇게 변한다』, 생존과 평화 12호, 1991.2.27., 8면)
- 김봉구(고려대 농업경제학 교수) GNP의 개념에 이제는 생산력의 증대 만이 아니라 환경문제와 관련한 「녹색 GNP」의 도입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GNP 환경투자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지구환경보존과 한국의 환경 및 경제정책』, 대화 통권7호(여름호), 1991, 34면)
- 홍성웅(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환경문제는 흔히 종교적 신념의 차원

에서 이야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조건과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국제문제로 인식되더라도 국내에 도입할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바,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염허가」·「환경표」·「환경채권」 등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들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구환경보존과 한국의 환경 및 경제정책』, 대화 통권7호(여름호), 1991, 34면)

- 노영화·이득연(한국소비자보호원) 환경정보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① 종합적인 환경정보의 관리 및 전달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환경처내에 설치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첨단기술정보 이용체계를 활용할 지역환경정보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환경정보의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② 제공정보의 공개성·정확성·해독용이성 및 양적 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③ 환경 오염피해에 대한 피해예방과 피해극소화를 위한 환경피해예측 대응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④ 시험검사시설을 구비한 공공 및 민간단체의 참여하에 「환경보호제품 표시제도」의 도입 및 환경처 주도하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의 제공과 홍보가 필요하다. (『환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1990, 171~174면)
- 김성희(한국부인회 총무부장) 소비자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① 정부의 철저한 환경보호의식, ② 정부의 환경시책이 전시적에서 실질적으로 변환, ③ 환경민간자문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구성, ④ 순수민간차원에서 환경관련단체간의 교류 및 지원의 필요, ⑤ 개인 환경보전운동가를 양성·격려, ⑥ 시민환경교육의 기회확대, ⑦ 철저한 환경관리대책의 강구, ⑧ 각 기업내에 「환경 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방안』, 서울의 환경보전 현황과 대책, 1990, 153~159면)
- 김형철(환경처 기획관리실 실장) 정부는 저공해 내지 무공해기술을 확대적용하는 한편, 폐적성을 높이되 생산성과 부가가치창출이 추구되도록 하고, 저공해기술을 개발하여 생산활동에 적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분산된 환경영업무를 유기적으로 종합 조정하도록 기능을 확고히 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 및 오염감시기능의 보충과 장래 오염예방을 위한 제도 및 기술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 (『21세기 환경문제와 그 정책방향』,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경제신문사주최 국가발전과 환경보전 시민대토론회, 1992. 6. 7., 55~56면)
-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민간중심의 시장기구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기업 등 민간이 능동적으로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

설에 대한 허가제 및 배출시설관리인 고용의무제와 자기측정의무제 등을 단기적으로는 신고제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여 지나친 규제에 따른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환경타임즈, 92.9.17., 7면)

③ 정부의 입법방향

- 이상돈(중앙대 법대 교수) 환경입법의 개선방향으로서는 ① 환경행정의 영역을 확장하고, ② 입법방식에 있어서는 다수의 법률에 의거하여 종복적인 법집행을 받지 않도록 하며, ③ 법치주의와 시민참여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환경입법의 개선방향』, 「환경법연구(제10권)」, 1988, 150~151면)
- 구연창(경희대 법대 교수) 환경입법의 입법방식은 환경오염현상이 그 종류에 따라 전혀 상이한 특질을 가지며, 그 규제방법도 각각 상이하므로 별개의 입법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매체규제의 통합방식에 따른 통합입법방식에 대해서는 먼저 분리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필요하고, 입법의 집행체제를 통하여 다매체규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법제 및 환경영정기능(중앙과 지방정부간)상의 개선방안』, 서울의 환경보전 현황과 대책, 1990, 127면)
- 박수혁(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정립방향으로서는 급속히 산업화·도시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서독의 환경법체계와 같이 특별(개별)적인 환경법규를 많이 제정하여, 이미 제정되어 있는 환경모법적 성격의 환경보전법을 더욱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무경계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와의 환경정보교환체제 내지는 환경협정 체결문제와 남북한간의 환경협정 체결문제 등에 대하여도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서도 이치란트의 환경법체계와 그 특색』, 「환경법연구(제6권)」, 1984, 76면)
- 서원우(서울대 법대 교수) 환경문제에 대한 입법론으로서는 환경피해의 위험이 있는 주민들의 합의를 받을 수 있는 주민참가절차 및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제도화와 환경문제를 광범위하게 도시계획 내지 토지이용 계획의 일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행정적으로 원자력위원회와 같은 안전심사기구를 충실히하고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따른 심사절차를 마련한 뒤에 실질적 증거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법원의 심사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환경행정소송의 제문제』, 「환경법연구(제2권)」, 1980, 20~21면)
- 조중래(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 환경보전법의 문제점으로서는 ① 공

해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반면에 정부의 책무사항을 재량화하여 법조문을 유명무실화, ② 처벌규정의 형평성 상실로 공해방지시설을 가동치 않거나 무허가영세업자에게 산업폐기물처리를 맡기는 결과의 초래, ③ 가해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치 않으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④ 정유업체에 대한 탈황시설의 의무조항 및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개별적 배출기준의 불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조적 결함, ⑤ 공해의 범위를 대기·수질·토양오염·소음·진동·악취로 한정하여 고형산업폐기물 및 일조권 등 다양해져가는 환경문제에 능동적 대처불능, ⑥ 사람이 받는 피해를 오염수치나 재산권피해액으로 파악하여 재산권과 관련된 생활환경으로 국한, ⑦ 가해자의 책임을 재산권침해에 한정하여 피해의 과소평가 위험, ⑧ 환경파괴의 원상회복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데, 공해가 갖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이 무시되는 점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부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제18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990. 6. 5., 15~16면)

- 민달기(국민당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환경오염의 원천을 막고, 환경관련법률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대기·수질 등 환경기준을 복지국가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특례법으로 규정하여 타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두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 8. 27., 5면)

(4) 국민의 의식전환

-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관리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생산된 물건들은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그 비용을 높이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겨울철 난방온도를 낮추는 노력과 아울러 더 나아가 환경을 지나치게 오염시키면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구매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의식이 생성된다면 우리의 환경오염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산업발전과 환경오염규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심포지엄」, 1991. 6. 14., 37~38면)
- 고철환(서울대 해양학 교수) 우리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양식은 시민운동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환경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인데, 환경문제는 실생활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노력이 보다 큰 효과를 내는 만큼 시민운동단체들의 광범위한 시민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구환경보존과 한국의 환경 및 경제정책』, 대화 통권7호(여름호), 1991, 34면)

- 정현경(이화여대 기독교학 교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게 된 정신적 기반이 인간중심적·남성중심적인 자연지배의 이원론적 서구문명에서 유래하였고, 또한 제3세계적 시각에서 볼 때 선진국이 환경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의 문제를 더 이상 선진국에 맡길 수는 없다. (『지구환경보존과 한국의 환경 및 경제정책』, 대화 통권7호(여름호), 1991, 33면)
- 김성희(한국부인회 총무부장) 소비자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시민 스스로 ① 환경에 대한 감시자, ② 지역주민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 ③ 환경오염업체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책임운동을 전개, ④ 자원재활용운동을 전개, ⑤ 환경보전생활의 실천 및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 ⑥ 환경관련단체간의 긴밀한 연대관계유지와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입후보자를 지지하여 우리의 살 권리 보장을 받아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방안』, 서울의 환경보전 현황과 대책, 1990, 153~159면)
- 전대련(한국YMCA 총무) 시민들이 환경에 적합한 생활을 하면서 환경을 살리려는 공통 관심사를 만들고, 이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비판 및 감시할 수 있는 시민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학교·대중매체·각종 모임 등에서 환경교육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 시민의소리 통권7호(11·12월호), 1990.12.26., 1면)
- 권오원(홍사단서울지부 간사) 홍사단의 시민환경운동으로서는 각 가정과 직장 등에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벌이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기업의 감시활동에 주력할 「환경경찰대」를 조직하고, 홍사단내에 「환경학교」를 상설화하여 무공해비누의 제조방법 및 쓰레기분리수거함 제작, 종이컵자동수거함 제작 등을 가르쳐 실생활에 응용케 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조선 92.6.20., 2면)

(e) 국민의 참여보장

-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할 때, 환경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국의 환경오염실태와 해결방안』,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주최 「환경오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문제 강연회 및 세미나 자료집, 1989.7, 16면)
- 박영숙(녹색의 전화 대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을 공개하고, 주민 여론수렴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정

부자료의 공개와 주민여론 수렴』, 녹색의 전화 1호, 1990. 10, 1면)

- 김성수(연세대 법대 교수)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수립단계에서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상응하는 지역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환경침해시설설치절차와 주민참여』, 고시계(92. 9), 112면)
- 노영화·이득연(한국소비자보호원)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참여의 방안으로서는 ① 환경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강화로 전문가의 환경정책의 견을 적극 수렴, ② 지역환경사업은 시행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특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일반 소비자의 의사반영을 위한 공청회의 상설화, ③ 각 지역수준(시·군)에서 소비자(주민)의 직접적인 환경감시 및 시정건의 체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공해감시위원회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산, ④ 기존 소비자단체의 공해감시활동에 대한 지원·협조의 강화, ⑤ 설명회·공청회의 상설화 및 주민 공람기간을 확장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견해서를 공람시키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1990, 174~175면)
- 안기희(민자당 환경전문위원, 국제환경문제연구소 소장)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환경의 변화를 측정하며, 환경오염·파괴를 경제할 수 있는 주민(시민)참여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지만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 사이의 정치적 연계가 구조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환경행정과 주민참여』,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환경경제신문사 주최 국가발전과 환경보전 시민대토론회, 1991. 6. 7., 84~85면)
- 서울 YMCA의 의견 ① 기업은 환경상품생산에 노력하면서 환경상품의 광고를 지양하여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② 정부는 소비자의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노력이 없는 기업체에 관하여는 스스로 환경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해야 하며, ③ 소비자는 환경상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함으로써 환경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환경마크제도운영 절실히 요구돼』, 「소비자」, 1992. 3., 53면)
- 한갑수(환경처 차관)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독일 등을 시발로 환경적합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E-마크(Ecological Mark)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적합한 산업체제의 전환과 아울러 국민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과감한 환경개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정책방향』,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심포지엄」, 1991. 6. 14., 15~17면)

- 강우혁(민자당 의원) 저공해상품을 생산함으로써 환경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E마크제도」는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 9. 3., 4면)

(2)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의견

(1) 환경영향평가제도

- 김상종(서울대 미생물생태학 교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대상사업의 제한·평가시기의 부적절·주민의견의 수렴부족·평가주체의 부적절·천편일률적 평가방법·짧은 평가기간·평가후 조치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큰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동아 91. 4. 12., 3면)
- 장재식(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기관의 설치와 환경영향평가시에 주민의 의사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타임즈 92. 8. 27., 5면)
- 신창현(환경정책연구소 소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자료의 공개촉진 및 주민의 토론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보장함과 아울러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시기, 사후관리제도의 확대·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환경입법의 오늘과 내일』, 코스모스피어, 1992. 7, 194~198면)
- 한국일보 사설 환경영향평가제를 위반하여 수도권의 신도시개발과 지하철 5·7·8호선 공사가 착공됨으로서 소음·공기오염·하수처리 등 각종 공해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공사진행을 중단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해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한국 91. 7. 19., 2면)

(2) 공간영향평가제도

- 오준근(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는 일단 개발되면 복원이 어렵고, 유해물질에 의해 지반이 완전히 오염되므로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은 끊임없이 공해물질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국토공간이용 관련법제를 분석하여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개의 가치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하는 바, 그 대안의 하나로 공간영향평가제도를 제언해 본다. (『환경영향평가와 공간영향평가』, 한국공법학회주최 「제24회 학술발표회」, 1992. 1. 25., 25~26면)

(d) 배출규제제도

- 구연장(경희대 법대 교수) 환경오염규제입법의 개선방안으로서는 ① 미규제대상인 오염의 종류와 오염물질을 점차 규제대상에 포함시킴과 함께, 규제자체도 점차 강화해야 하고, ② 환경기준은 기준설정의 적정화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설정토록 하여 관계부처의 이해와 국민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 및 토지이용과의 상관관계에서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서 설정토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연구함과 더불어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정에 점진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반영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 오염자의 자발적인 기여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법제 및 환경영정 기능(중앙과 지방정부간)상의 개선방안』, 서울의 환경보전 현황과 대책, 1990, 133~134면)
- 김이열·전창조·이상돈(중앙대 법대 교수 등) 배출규제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총량규제방식의 도입과 기업의 오염물질배출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경제적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① 총량규제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정이 민주적·합리적으로 되도록 하며, 규제대상인 배출시설업체·방지시설업체·지역주민 및 일반관계인 등에게는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고, ② 오염물질의 배출을 극소화시키는 경제적 방안으로서는 미국의 「배출권판매제도(Emission Trading)」가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의 배출규제행정의 법적 구조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제11권)」, 1989, 106~107면)
- 정재길(전북대 법대 교수) 부과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환경오염규제방법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도록 부과금의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② 부과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조직을 영향권이나 수계별로 나누면서 일원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③ 규제기준을 「농도 규제방식」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하며, ④ 측정·감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측정기기 및 측정·기술의 개발을 유도하여 부과금제도의 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며, 아울러 세계각국에서 시행되고 있

- 는 소음분야의 부과금제도와 고형폐기물처리를 위한 부과금제도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분석·고려하여야 한다. (『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환경법연구(제5권)」, 1983, 26~27면)
- **장재식(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배출부과금제도에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맞는 「차등부과제」를 도입하고, 오염이 심한 대도시 및 공단지역부터 총량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환경타임즈 92.8.27., 5면)
 - **민달기(국민당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환경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수혜자부담원칙의 비용부담제를 적용하고,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원인자비용부담원칙을 확대 적용, 파괴자에 대한 벌칙을 벌금형에서 신체형으로 강화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8.27., 5면)
 - **신창현(환경정책연구소 소장)** 환경보존 및 수출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준 및 배출부과금제도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악용을 방지해야 하고,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배출오염물질의 농도 뿐만 아니라 배출량까지 규제해야 한다. (『환경입법의 오늘과 내일』, 코스모스피어, 1992.7, 194-198면)
 - **윤서성(환경처 원주지청장)** 비용부담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비용부담의 원인자범위에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수혜자집단 등을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환경문제에 대한 자세전환을 요구해야 하고, ② 국민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비용부담계획결정절차에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모든 자료의 공개를 제도화하여야 하며, ③ 비용부담금징수의 환원투자장치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기금의 설치가 요망된다.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제10권)」, 1988, 31~32면)

(3) 대기보전 관련 의견

(a) 학계

- **장영기(수원대 환경공학 교수)**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균 대기오염도는 전측정망에서 얻어지는 측정치를 단순 산술평균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정확한 오염도의 파악이 어렵고, 또한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치는 외국보다 2배정도 완화되어 있어서 국민건강을 위해 대기환경기준치의 조정이 시급하다. (환경타임즈, 92.9. 24., 1면)
- **구연창(경희대 법대 교수)** 세계 각국이 지금까지 그토록 환경오염의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성우(acid rain)라는 새로운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 수중생태계, 농작물, 산림, 재산 및 건강에 까지 심각한 피해를 줌으로써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심각한 환경문제를 제기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산성우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법이론적 체계 및 입법·정책적 대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제조명』, 「환경법연구(제11권)」, 1989, 176~177면)

- 장 원(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산성비문제는 기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산성비를 유발시키는 대기오염물질이 국경에 관계없이 왕래함으로 인하여 해결의 어려움이 있는 바, 산성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성비 대응전략』, 환경과 공해, 1990. 6. 16., 8~9면)
-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중국과 북한의 공업화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의 이동으로 우리나라에는 산성비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북아시아에서는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협의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및 민간단체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처마련이 있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 8. 27., 4면)
- 이경제(서울시립대 교수, 응용 생태학회 회장) 지난 5년 사이에 토양의 산성도가 식물이 살 수 없는 한계선에 다다르는 등,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은 산성비의 직접 피해가 우려되므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겨레 92. 4. 29., 21면)
- 안병훈(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오존층보호운동」에 참여해야 함은 오존층파괴로부터의 피해가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불참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경제 및 기술교역상의 불이익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험을 되살려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대처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지구환경문제의 국제적 추세 -우리나라 환경외교의 문제-』, 한국아동·인구·개발 의원연맹 주최 「환경문제에 관한 대토론회」, 1990. 6. 15., 27면)

(4) 정당 및 사회단체

- 안기희(민자당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청정 연료의 공급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여 대도시의 아황산가스로 인한 공해를 원천적으로 해소시키고, 저공해 승용차의 보급률을 현재 80%에서 1996년까지 95%로 높이며, 1993년부터는 무연휘발유의 보급율을 100%로

하면서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2000년까지 단계별로 강화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8.27., 5면)

-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우리의 입장(1987.6.5)』 ①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서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반도 주변의 모든 핵무기를 철수, ② 공해의 산물인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노동자의 단결과 민주세력의 참여로서 추방, ③ 농민과 도시소비자간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농약공해를 추방, ④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루탄사용을 즉각 중단, ⑤ 공해실상의 공개, ⑥ 선진국의 공해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보호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추방, ⑦ 형식상 명시된 환경권은 공해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민주헌법을 쟁취해야 한다.(「공해연구」(15호), 1987.7, 5면)
- 전국 핵발전소·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 『성명서』 정부와 핵추진 측이 해당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한다면 대대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에너지 의존정책을 탈피하고, 우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대체에너지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함과 아울러 ① 「짜집기 원자로」 영광 3·4호기 건설의 중지·2030년까지 50기 추가건설계획의 백지화, ② 울진핵발전소 3·4호기 건설계획의 철회, ③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핵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의 철회, ④ 대체에너지체계의 수립, ⑤ 에너지정책에 대한 합리적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범국민적인 공청회의 실시를 주장한다.(생존과 평화 18호, 1992.4.27., 52~53면)

(4) 실무관계자

- 김형철(환경처 기획관리 실장) 우리나라의 경우, 경유자동차의 보유율이 높아 도심의 대기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가스저감대책 및 사용역제정책이 필요하고, 향후 예상되는 석면·PCB(폴리염화비페닐)·PCP(펜탈클로로페놀) 및 방사능·라돈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며, 아울러 자유산고유황연료를 아무런 정화조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공업화로 인한 산성비피해에 대한 국가간 상호간의 협의와 해결방안의 강구가 요망된다.(『1990년대의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 「환경법연구(제11권)」, 1989, 13-15면)
- 이석조(환경처 대기제도과 계장) 인근 수목건물 등의 영향으로 대기 오염측정치에 큰 오차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측정소는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1995년까지 대기측정망을 92개소로 증설할 예정이며, 대기환경기준치에 대해서는 강화할 예정이지만 아황산가스 및 부유분진의 경우에

는 연평균기준치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타임즈, 92.9.24., 1면)

- 이선용(전 환경처 법무담당관) 선진국들이 우주공간에 전략무기를 설치하여 시험 및 궤도비행 등으로 우주쓰레기문제를 야기시켜 왔는 바,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세계공동의 이익을 위한 우주공간이 되도록 관리원칙을 수립해야 하고, 우주공간의 활용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및 후발주자들의 참여와 평등대우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법연구(제12권)」, 1990, 73·83면)

(4) 수질보전 관련의견

◇ 학계

- 신응배(한양대 토목공학과 교수) 수질보전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① 외국의 예를 감안하여 근대 도시면모를 갖출 수 있는 정책의 도입, ②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수질환경기준 등의 상호 연관성의 규명을 통한 재점검, ③ 오염상습행위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강력한 행동강령을 법제화하거나 제도적 장치로 성문화, ④ 질적 내실화와 단위투자에 대한 효율극대화 방안모색, ⑤ 지역별 핵심전문가조직을 pool제로 운영, ⑥ 지방대학 전문인력의 활용체제를 도입함으로서 측정회수를 현 월1회에서 주1회(8일기준)로 확충 및 측정자료를 완전개방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민주공개행정구현, ⑦ 업체별 환경관리인의 지위격상과 전담부서 설치제도의 법제화 등을 통한 오염방지의 실효성 제고, ⑧ 자가측정빈도 및 자료의 객관적 신빙성 입증 및 고의적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제재의 법제도화가 필요하다.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1991, 5~6면)
- 구연창·원학희·권오승(경희대 법대 교수 등) 지하수오염의 방지대책으로서는 ① 지하수오염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② 지하수오염의 방지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전법상 「수질 및 토양의 보전」에 관한 제5장 중에 명문규정을 설정하며, ③ 일반 및 산업폐기물의 매립처리장소 선택과 관련하여 이른바 용도지역지구제(zoning)를 채택·적용하고, ④ 일반 및 산업폐기물의 매립처리장소 선택에 관한 규정을 환경보전법 제5조의 환경영향평가대상의 하나로서 추가하며, ⑤ 환경청 수질보전국내에 지하수보전과를 설치하고, 아울러 국립환경연구소에 지하수오염을 연구·조사·자료수집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수오염의 방지대책』, 「환경법연구(제7권)」, 1985, 126~127면)
- 최순학(한국자원연구소 연구실장) 지하수자원은 한 번 오염되면 원상복구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개발과

규제를 해야 한다. (한겨례 92.6.28., 12면)

- 한정상(수리지질학 박사) 지하수가 생활하수·공장폐수·가축분뇨·농약 등의 각종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고 있는 반면에 지하수보전정책은 전무한 실정인 바, 정부는 지하수오염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하수보호구역을 설정하며 지하수맥이용현황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국민 92.7.11., 19면)

(4) 정당 및 사회단체

- 강우혁(민자당 의원) 생활폐수가 전체 폐수배출량의 60%에 이르고 있고, 산업체 및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또한 특정지역에 고정적 오염원이 되고 있어서 생물의 성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이러한 유해한 물질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하다. (환경타임즈 92.9.3., 4면)
- 장재식(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수량과 수질, 상수도와 하수도 등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업무를 한강관리청과 같이 수계별로 통합 일원화해서 맑은 물 공급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습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도시 및 공단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총량규제를 실시해서 맑은 물과 공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8.27., 5면)
- 김대중(전 평화민주당 총재) 맑은 물 종합대책으로서는 ① 국회내에 상임위소속 위원들로 「맑은 물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② 평민당의 「상수원수질보호특별조치법안(89.12.7.)」을 통과시켜 제도적 근거를 마련, ③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④ 평민당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법안(89.12.8.)」을 통과시킴과 아울러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경제적 제재에 의한 환경오염규제를 강화, 또한 행정부차원에서는 ① 실질적인 환경정책을 마련, ② 환경처의 위상강화와 취사장 및 정수장 관리업무의 보사부 일원화, ③ 생수시판 양성화조치의 보류와 팔당호 골재채취계획의 취소, ④ 맑은 물 대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상수원의 수질기준신설과 정수의 음용수 관리기준강화 및 오염물질배출기업들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함으로써 농도규제의 미비점을 보완, ⑤ 현지주민들의 공해감시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평화민주당의 맑은 물 종합대책 (91.3.25)』)
- 김문수(민중당 환경정책위원장) 수질오염을 막기 위하여는 ① 환경처의 승격·환경관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예산 및 인원의 확대·환경오

- 염실태와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해 환경행정을 강화해야 하고, ② 기업의 실소유자처별·허용기준치의 강화·피해보상 및 위반자 처벌조항의 강화 등을 반영한 환경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③ 주민들의 지속적·조직적인 환경보전운동의 전개가 있어야 한다. (『민중당의 수질관련정책』, 1991, 1~2면)
- 신창현(환경정책연구소 소장) 지하수의 오염과 낭비로 인한 지반침하를 환경오염의 정의에 포함시켜 「지하수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관리해야 하고, 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자원관리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와 하수, 수량과 수질을 유역별 관리체계로 통합하는 유역관리청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환경입법의 오늘과 내일』, 코스모스피어, 92.7, 194~198면)
 - 양재만(농어촌진흥공사 영농처장) 오염된 지표수라 할지라도 지하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정화되기는 하지만 대수충 자체가 오염된 경우에는 지하수의 오염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 92.4.13., 19면)

(4) 실무관계자

- 김형철(환경처 기획관리 실장) 광역상수원의 대부분은 위락 및 숙박시설의 건설로 인해 오염되고 있으며, 도시하천은 생활하수와 쓰레기 등에 의해, 공단 및 대형공장 주변하천은 공장폐수에 의해, 광산지역 및 비금속공단지역의 하천은 중금속에 의해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1990년대의 환경정책방향과 과제』, 「환경법연구(제11권)」, 1989, 12면)

(5) 토양보전 관련의견

- 구연창(경희대 법대 교수) 토지이용규제법의 개선방안으로서는 토지 수용·환지·환물·보전지역권의 설정·개발제한불이익의 환급제도 등을 병행하여 그린벨트제도는 지속시키되 도시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제한으로 인한 불협화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고려돼야 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전·유지에 대한 관할은 환경처로 하여야 한다. (『환경법제 및 환경행정 기능(중앙과 지방정부간)상의 개선방안』, 서울의 환경보전 현황과 대책, 1990, 135면)

-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에 대하여는 정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토지정책이나 대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서울시 환경보전제도의 개선』, 서울의 환경보전 현황과 대책, 1990, 173면)

(6) 해양보전 관련 의견

(ⓐ) 학계

- 구연창(경희대 법대 교수)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선방안으로서는 ① 유출사고의 오염방제를 기동력과 전국적 해양조직을 갖춘 내무부(해양경찰대)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방제기술의 개발·기술훈련 및 평가는 환경처 및 과기처와 협력토록 해야 하고, ② 해양오염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선박에 군 및 정부의 선박을 제외시키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므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환경법제 및 환경영행기능(중앙과 지방정부간)상의 개선방안』, 서울의 환경보전 형황과 대책, 1990, 134~135면)
- 박수혁(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서독의 북해(Nordsee)나 동해(Ostsee)에 있어서의 관계국협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해역에 있어서도 인접국간의 오염방지협정에 대비하여 정부가 체결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서도이치란트의 환경법체계와 그 특색』, 「환경법연구(제6권)」, 1984, 75면)
- 이상돈(중앙대 법대 교수) 해저석유의 발견이야말로 국제적 염원이라 하겠지만 「Ixtoc I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의 시초단계에서도 환경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한 해저자원개발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해저석유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의 법적 문제점』, 「환경법연구(제5권)」, 1983, 129면)

(ⓑ) 실무관계자

- 김형철(환경처 기획관리 실장) 황해는 생태계의 풍부성과 한반도의 거의 모든 하천이 황해로부터 유입된다는 이유에서 아주 중요한 해역인데, 중국이 황해주변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 황

- 해연안을 개발함으로써 황해가 오염되어 우리나라의 하천오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가 황폐화되고 있어서 국가간의 협의가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해안을 개발할 때는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위치의 선정과 계획을 신중하게 입안함과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오염의 최소화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1990년대의 환경정책방향과 과제』, 「환경법연구(제11권)」, 1989, 16면)
- 이선용(전 환경처 법무담당관) 세계 여러 나라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양법조약에 대한 비준절차를 마쳐야 하고, 현재와 같은 어족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서 어로협약의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에 유해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관련 협약들을 강화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법연구(제12권)」, 1990, 73면)

(7) 소음·진동규제 관련의견

- 신창현(환경정책연구소 소장) 항공기 및 철도와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규제에 필요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며, 고속전철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해야 하고, 비행장 주변주민들의 소음·진동피해의 예방을 위한 환경기준은 「항공법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면서 「소음·진동 규제법」에 군용비행기를 포함하는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입법의 오늘과 내일』, 코스모스피어, 1992, 7, 194~198면)

2. 폐기물관리에 관한 입법의견

(1) 폐기물관리정책 관련의견

Ⓐ 학계

-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쓰레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①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보조, ② 재활용폐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 ③ 비닐봉지를 포장용과 쓰레기용으로 구분하여 규격화, ④ 쓰레기양을 늘이고 분리수거를 어렵게 하는 아파트의 쓰레기슈트는 없애고 옥외에 컨테이너를 두는 방안, ⑤ 쓰레기처리비용을 버린 사람에게 부과하기 위해 환경오염상품을 만든 생산업체에게는 생산시에 부과하고, 각 가정에는 쓰레기용비닐봉지에 수거료를 표시하여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쓰레기수거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아울러 산업쓰레기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므로 사전예방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환경타임즈 92.8.27., 4면; 『지표로 본 한국의 환경오염』, 「다가오는 시민환경피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주최 환경피해구제시민운동 세미나, 1992.5.11., 59면; 『서울시의 쓰레기관리제도 개선방안』, 서울의 환경보전 현황과 대책, 1990, 84~86면)
-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 규격화된 쓰레기통 및 봉지를 보급하여 쓰레기배출량과 수거료를 연결시키는 방안, ② 쓰레기수거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일임하면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업체·주민·정부대표로 구성하는 방안, ③ 플라스틱제품 및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면서 각 가정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환경타임즈, 92.9.24., 8면; 『산업발전과 환경오염규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심포지엄」, 1991.6.14., 38면; 『서울시 환경보전제도의 개선』, 서울의 환경보전 현황과 대책, 1990, 173면)
- 오준성(전남대 공대 교수)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폐기물의 특성에 적합한 쓰레기처리기술의 도입과 과학적·위생적인 쓰레기의 수집 및 운반이 필요하고, ② 소비자 및 생산자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및 고발의식을 가지면서 쓰레기배출량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소비제품을 제조하고, 폐기물이 되었을 때는 분리수거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에 노력

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광록, 1992. 6, 27면)

- 구자공(한국과학기술원 토목공학과 교수) 일반쓰레기의 관리는 철저한 분리수거 및 중간처리시설의 도입과 소각시설·주방쓰레기의 메탄발효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산업폐기물의 관리는 자원화 및 재활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유홍지쓰레기의 관리는 행정적·제도적 뒷받침하에서 일반쓰레기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수집 및 쓰레기분리수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의 폐기물처리 대책』, 서울의 환경보전현황과 대책, 1990, 78면)
- 권태준(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쓰레기 감소운동은 근검절약 및 절제와 같은 전근대적 생활덕목의 강조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개개인과 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 및 소비문화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경타임즈, 92. 9. 24., 8면)
- 도갑수(숭실대 폐기물자원화연구센터장) 환경보전과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거두기 위한 폐기물재활용은 먼저 제도적·기술적·관념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의 집중적인 캠페인과 폐기물관리법개정 및 분리수거제실시 등으로 국민의식 및 제도적 측면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으나 폐기물의 자원화기술은 아직 초보단계여서 기술개발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서울 92. 8. 28., 11면)

(4) 정당 및 사회단체

- 민달기(국민당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폐기물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하고, 폐기물처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며, 폐기물매립시설 인근지역의 개발사업이행을 의무화하면서 복지후생시설을 병행토록 하고, 폐기물불법처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며,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되 폐기물재활용은 재활용설비를 확보한 후에, 분리수거제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 8. 27., 5면)
- 장재식(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쓰레기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는 쓰레기의 발생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모색하고, 석유 및 석탄연료에 갈음하여 천연가스(LNG) 및 태양열 등의 저공해에너지의 사용을 높이고, 쓰레기소각방식에 있어서도 열병합발전소를 택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 8. 27., 5면)
- 안기희(민자당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폐기물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서는 광역 위생매립지의 건설을 통하여 쓰레기관리를 선진국형 체계로 확립시켜야 한다.(환경타임즈 92.8.27., 5면)

- 정홍식(녹색의 전화 상담위원) 특정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환경보전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② 매립위주의 쓰레기처리방식에 소각방식을 병행하며, ③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영세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각종 세계·금융상의 지원 및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④ 불법폐기물처리업체의 규제에 대해 별도강화를 통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을 병행해야 한다.(『폐기물매립장문제와 주민운동』, 녹색의 전화 1호, 1990.10.4~5면)
- 김천주(대한주택클럽연합회 회장)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및 오염발생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의 차원을 넘어 생활화 및 법규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를 제도화하면서 영세한 재활용품 생산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아울러 소비자와 기업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조선 92.6.20., 2면)
- 김영주(대한주택클럽연합회 총무)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생가능한 재활용쓰레기부터 수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쓰레기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재생산업체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서울 92.3.31., 14면)
- 최순해(서울 YMCA 자원봉사자모임 회장) 환경보전을 위해 자원재활용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키고, 이를 위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재활용품수거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실천의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한겨례 92.6.13., 8면)
- 박인례(서울YWCA 생활환경담당 간사) 비닐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바구니나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정부와 기업은 썩는 비닐봉투를 개발하여 찐값에 보급해야 한다.(조선 92.8.14., 2면)
- 김주현(대한요식업중앙회 지도국장)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는 수 천년 내려온 우리의 음식문화와 연관된 문제라서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시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운동에 적극적인 음식점에 대한 세제혜택과 시설환경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된다.(조선 92.7.23., 3면)

(4) 실무관계자

- 김형철(환경처 기획관리 실장) 쓰레기 매립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소각방식을 확대하거나 분리수거제도의 도입을 통한 쓰레기의 재활용에 노력해야 하고, 폐기물처리과정에서 시설이나 능력이 부족한 업자들에 의한 무단 및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합성화학물질의 증가에 따른 유독물질 발생으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990년대의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 「환경법연구(제11권)」, 1989, 13~15면)
- 김의재(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 급증하는 쓰레기의 기본처리방향은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분리수거 및 재생품의 활용을 위한 재생기술의 개발을 통해 자원화를 추진해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처리하여 폐열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업에서도 재생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조선 92. 6. 20., 2면; 환경타임즈 92. 9. 24., 8면)

(5) 기타

- 유길용(한국불교사회교육원 사무국장) 환경문제는 쓰레기를 줄여 단순히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생활화를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의지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제문제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조선 92. 6. 20., 2면)
- 오태순(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편리함을 추구해 온 우리의 생활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중대시켜 쓰레기문제를 사회문제로 만들고, 이로 인한 자원재활용문제 및 어린이의 환경교육, 그리고 철저한 보상방법의 강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아울러 국민의 의식개혁과 재생품을 생산하는 영세업자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선 92. 6. 20., 2면)
- 환경타임즈 사설 정부는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수거 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엄청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 8. 27., 2면)

(2) 폐기물관리법 관련의견

(a) 학계

- 구연창(경희대 법대 교수) 폐기물관리법의 개선방안으로서는 ① 매립지의 확보·지정·변경의 경우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하되, 지방정부의 매립장설치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② 도시의 경우에는 수거·운반·처리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확립하며, ③ 관련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처와 협동하여 고체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사업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고체폐기물의 제조·공급자에게는 법적 구속력과 불이익이 적용되도록 「회수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환경법제 및 환경행정기능(중앙과 지방정부간)상의 개선방안』, 서울의 환경보전 현황과 대책, 1990, 134면)
- 권오승(경희대 법대 교수)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은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일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면서 적정처리의 곤란물(폐차 등)은 일반폐기물에 포함시키되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적절한 입법이 없어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 (『배출부과금제도와 유사한 제도』, 「환경법연구(제5권)」, 1983, 90면)
- 구자공(한국과학기술원 토목공학과 교수)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여도 관청의 허가 및 관련법규가 너무 까다로워 사료나 비료의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현행 「비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 등을 개선하여 「자원재활용촉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조선 92.7.23., 3면)

(b) 정당 및 사회단체

- 신창현(환경정책연구소 소장) 환경관련법의 입법방안으로서는 ① 원자력법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과 책임중 일부를 환경처장관에게도 부여하여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처분장의 환경오염에 대해 중복규제도록 하고, 또한 ② 쓰레기매립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와 설치지원에 관한 법률」, 바젤협약가입을 위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원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및 「환경산업지원육성법」 등의 법률을 마련해야 하며, ③ 경제개발부처와 대등한 위치에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법의 오늘과 내일』, 코스모스피어, 92.7, 194-198면)

- 류진구(전국세차윤활유급유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환경보전을 위해서 윤활유교환이 자유로운 자동차에 대해 배출시설의 허가가 없이는 함부로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고, 또한 폐수의 재활용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9.17., 8면)

(4) 실무관계자

- 상 공 부 폐기물관리방안의 입법방향으로서는 ① 알루미늄 및 철제의 재질표시의 의무화와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거된 빈깡통에 관한 보상액을 상향조정, ② 도심의 시유지 및 군유지와 그린벨트 및 자연녹지를 폐타이어의 집하장으로 사용, 플라스틱원료별 분류표시번호의 도입과 플라스틱용기의 재질을 표준화, ③ 폐기된 플라스틱을 열병합발전용으로 사용유도, ④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설비의 도입 및 집하장부지구입시 세제혜택, ⑤ 유리병과 관련하여 생산업체외에 학교·주부클럽·소비자단체에게 예치금을 환불, ⑥ 고철가공업을 우선 유성업종으로 지정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을 제정해야 한다. (환경타임즈 92.9.17., 8면)

3. 환경피해구제에 관한 입법의견

(1) 환경분쟁해결절차 관련의견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구연창(경희대 법대 교수) 환경오염피해와 같이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경우에 그들 각각의 피해는 소액이나 그 총액은 엄청나고, 종래의 소송제도로서는 구제의 만족을 구하기가 힘들며,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이러한 환경침해에 대해 효율적인 보전을 할 수 없으므로 환경이익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대량적·집단적 처리에 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환경오염의 사법적구제 재조명』, 「환경법연구(제11권)」, 1989, 173·176면)
- 김성수(연세대 법대 교수)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수당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 반면, 현재의 소송구조하에서는 다수당사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의 주체가 개인이건 국가이건 다수당사자간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집단적 소송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그 방안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구제수단인 이기적 단체소송제도보다는 사전적 구제·처분의 취소·행정청의 특정한 작위 및 부작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행정법상의 단체소송 -독일의 환경법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연구(1991년 10월호), 124~125면)
- 손동원(목포대 법대 교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행정력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시민의 제소에 의한 구제가 필요하므로 시민이 직접 법원에 제소하여 유지적 구제를 얻어서 행정기관의 환경오염규제집행을 강제하고, 또한 스스로 집행에 참여하여 환경오염구제법의 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시민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미국환경법상의 시민소송제도』, 「환경법연구(제10권)」, 1988, 67·69면)
- 조정환(단국대 법대 강사) 환경오염에 대한 공법적 구제로서는 ① 환경오염의 절대적 유해성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로서 입법자의 환경침해위법성을 다투는 입법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 ② 환경보전우선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환경조건의 기준에 대한 위헌성다툼을 인정, ③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는 허가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익」을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평가하여 개인소송을 인정하면서 소이익의 법률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소송 및 민중소송을 인정, ④ 법률이 정하는 환경보전·개선조치의 요구에 불이행할 때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의 작위의무화소송·규제권발동청구권(행정개입청구)을 인정, ⑤ 행정청의 공공시설설치로 환경오염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공해원인구명·조사에 대한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환경행정소송』, 한국공법학회주최 「제24회 학술발표회」, 1992.1. 25., 31~32면)

- 윤종현(변호사) 현행 민사소송법은 가해자 및 피해자의 단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피해당사자가 불특정다수인 환경소송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바, 이러한 경우의 구제수단으로서 ① 집단구성원중의 1인 또는 다수가 수권 없이 소권을 행사하고, 재판효력을 구성원 전부에게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② 환경권을 현행 법체계하에서 구체적 권리로 승인하면서 주민이 규제관할권을 가진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민소송제도」의 도입을 모색해야 하고, 아울러 ③ 현행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소송구조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환경피해구제 법제도 및 적용상 현실과 문제점』, 「다가오는 시민환경피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울YMCA시민중계실주최 환경피해구제시민운동 세미나, 1992.5.11., 41~43면)

(4)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노영화·이득연(한국소비자보호원)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조정법」의 제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향후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에 신청절차의 간소화·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확보·분쟁조정의 효력강화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환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1990, 177면)
- 이상규(고려대 법대 교수) 환경분쟁처리장치의 개선방안으로서는 ① 환경쟁송을 민사쟁송(civil action)과 행정쟁송(judicial review)의 절충적인 유형으로 정립, ② 환경권과 관련해서는 원고적격을 완화하여 집단소송의 특례를 인정, ③ 입증방법 및 정도에 대한 특수성을 수용, ④ 가치분절차의 용이 등의 법제개혁이 필요하고, 아울러 환경분쟁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국제적 연구를 통해 분쟁제기절차의 간편화·구제의 적정화·환경정보의 공개 등을 확보해야 한다.(『환경분쟁처리장치의 문제

- 와 개선책』, 「환경법연구(제10권)」, 1988, 182~183면)
- 서원우·최송화(서울대 법대 교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①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단일법으로 제정, ②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알선·중재·재정제도를 도입, ③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등의 방안을 모색, ④ 절차적으로 신속·간이성을 반영, ⑤ 조정전치주의와 직권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아울러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심각하여 조속한 해결이 요청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거나 당해조정안을 신문·방송 등에 공표하여 조정안의 수락을 유도하도록 규정해야 한다.(『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제7권)」, 1985, 68~77면)
 - 권용우(단국대 법대 교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조정위원회의 독립성보장과 전문화·조정절차의 개선·조정비용의 문제·조정전치주의의 채택·강제조정의 병용·조정조서의 불준수시 등에 별칙규정의 신설·부당한 조정의 각하신설 등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하고, 아울러 간이·신속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확립과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 「환경법연구(제2권)」, 1980, 72면)
 - 신창현(환경정책연구소 소장)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은 종전보다 많이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가해자인 기업과 피해자인 주민을 대등한 관계로 파악하여 집단민원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후관리에만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한정하고 있어 오염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과 주민의 관계를 불평등한 관계로 파악하여 합의보다 신속·공정한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해기업의 조업중지·이전명령 등 관할관청에 조치이행청구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환경입법의 오늘과 내일』, 코스모스피어, 1992.7, 194-198면)

(2) 환경오염피해보상 관련의견

(1) 환경책임법의 제정

- 유지태(충북대 법대 교수) 환경책임문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입체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서 환경피해구

제에 대한 특별 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하여 환경책임법을 제정해야 하는 바, 환경책임의 입법화과정에서 입증책임문제·환경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다른 법체계와의 유기적인 협조, 즉 환경행정법에 의한 감독기능과 환경형법에 의한 보장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책임과 관련된 논점』, 고시연구(1992년 6월호), 69~70 · 83~84면)

(4) 환경오염건강피해보상법의 제정

- 노영화·이득연(한국소비자보호원) 온산지역의 주민피해소송 및 상봉동주민의 진폐중소송과 같이 공해로 인한 건강피해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피해는 성격상 긴급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과실·인과관계의 입증곤란 등으로 기존의 소송제도로는 적절한 구제를 할 수 없으므로 「환경오염건강피해보상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1990, 178면)
- 전창조(부산외대 법대 교수) 우리나라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진폐증 등의 환경관련 산업재해가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어서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환경오염건강피해자의 구제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서 일본의 「공해건강피해보상법」과 같은 입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환경오염건강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제11권)」, 1989, 146면)

(5) 환경보험제도의 도입

- 노영화·이득연(한국소비자보호원) 환경오염피해보상액은 거의가 거액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기업측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아서 책임의 사회적 분산을 위한 공해보험 또는 환경보험제도의 도입이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확보를 위하여 요청된다. (『환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1990, 178면)
- 구연창(경희대 법대 교수) 공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으로서는 신속·공정·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적 구제제도와 아울러 책임의 분산을 통한 가해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무자력 등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구제확보를 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재조명』, 「환경법연구(제11권)」, 1989, 178~179면)

(4) 기타 개선방안

- 노영화·이득연(한국소비자보호원) 환경피해구제를 위해서는 ① 환경 상담원제도를 각 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② 환경불만처리업무를 위해 환경오염의 동향·전문지식·선례 등에 관한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들 상호간에 교환하며, ③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진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환경진정처리에 관한 상세한 분석서를 발간해야 한다.(『환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1990, 175~176면)
- 구연창(경희대 법대 교수) 오염피해에 적절히 대처하여 구제의 총실을 도모하려면 사법적 구제는 피해구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확충·보완하고, 행정적 구제는 당사자가 신뢰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화·공정화하여야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들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확립』, 「환경법연구(제2권)」, 1980, 115면)
- 오석락(변호사) 환경피해구제를 위한 공해소송의 절차적 문제로서는 소송물의 구성·감정·가처분 등이 가까운 시일내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공해소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이러한 공해소송에 대한 관계당사자의 참된 인식이 중요하다.(『공해소송의 절차적 과제』, 「환경법연구(제2권)」, 1980, 51면)

4. 환경형법에 관한 입법의견

(4) 학계

- 신동운(서울대 법대 교수) ① 환경문제의 효율적 대처, ② 환경파괴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 및 범죄성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의 기대, ③ 환경법규의 집행상 통일성의 도모, ④ 행정법상의 특수원리와 형법상의 기본원리의 조절을 통한 원활한 법집행 등을 위해 환경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야 하고, 환경오염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배상명령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환경오염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는 개인과 민간환경단체가 적발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정신청범위를 확대해야 한다.(『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제2회 형사정책세미나, 1990. 4. 12., 27 · 39~41면 ; 한겨레 90. 4. 13., 5면)
- 김일수(고려대 법대 교수) 형법개정시안의 경우에 환경범죄에 대한 규정을 한 조문만 신설하여 환경범죄규제에 미흡한 바, 환경범죄의 범의에 대한 의식형성 및 일반예방기능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여러 영역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조항과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등을 흡수하여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법행정(1992. 6), 29-30면)
- 조병선(청주대 법대 교수) 형법개정시안의 환경범죄규정으로서는 환경범죄규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환경형법과 환경행정법의 완전한 분리가 요구되는데, 현재 산재하여 존재하는 개별환경행정법규내의 환경형법규정을 통일적으로 형법전에 집중화시켜야 한다.(『형법개정과 환경범죄』, 한국형사법학회 정기총회 「형법개정의 제문제」, 1991. 11. 29., 7면)
- 박상기(연세대 법대 교수) 환경형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대상의 처벌범위와 규제행위를 확대하고, 환경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하면서 행정법적 종속성을 바탕으로 형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환경범죄와 한국형법개정시안의 방향』, 한독법률학회주최 「한·독환경법국제학술회의 제3분과: 환경형법」, 1992. 4. 4., 137면)
- 배종대(고려대 법대 교수) 환경범죄의 경우에는 행정법규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범죄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동아 92. 4. 22., 5면)

(4) 실무관계자

- 김진환(법무부 검찰2과장) 환경범죄는 특별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환경파괴가 범죄라는 사실을 천명하여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의미에서 형법에 편입시켜야 한다. (동아 92. 4. 22., 5면)
- 선우영(서울지검 검사) 환경범죄를 줄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배출의 고의성 및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그 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이 경우에 기업의 하급 실무자가 아니라 중간관리자 및 최고경영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 92. 6. 3., 3면)

(5) 기타

- 신창현(환경정책연구소 소장) 정부가 마련한 형법개정안은 종전 규정의 일부를 손질한 것에 불과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환경범죄의 입법방향으로서는 기업형환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형법에 흡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환경입법의 오늘과 내일』, 코스모스피어, 1992. 7, 194-198면)
- 대한변호사협회 환경범죄에 관한 형법개정시안의 내용에 대해 환경범죄는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이므로 형량에 있어서 고의범을 업무상과 실범(시안 제284조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부당하고, 환경오염범의 법정형 또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식의견으로 낸다. (『형법개정시안에 대한 대한변협의견서(1992. 3. 2.)』)
- 서울신문 사설 환경범죄의 규제조항들은 오염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가중처벌만을 고려하여 사업자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오염의 사전 및 중간단계에서 오염방지의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들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서울 91. 4. 5., 2면)
- 조선일보 사설 환경범죄를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배출기업에 대해 고의나 과실에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부담시켜야 하고, 형사책임의 부담도 기업의 하급실무자가 아니라 중간관리자 및 최고경영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조선 92. 3. 3., 3면)

III. 외국의 환경관련 입법례와 우리의 입법방향

“현세대와 다음세대가 생활하여야 할 자연환경의 보호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모든 경제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라는 이란(Iran) 헌법 제50조의 환경조항은 환경문제의 중대함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제 환경문제는 각국의 정치의 신소재로 등장함은 물론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지구촌의 당면과제의 하나로서 당연시되고 있다. UN의 환경과 성장에 관한 국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1987년에 발간한 보고서인 ‘우리의 공동미래 (Our Common Future)’의 제3부 「인류의 공동대처방안」에서는 각국은 낙후된 현재의 환경관계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UN의 통솔하에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한 세계선언 및 이를 위한 차기 국제회의를 준비하며, 환경과 자연의 관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강화시켜 나갈 것을 역설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1969년에 환경영책기본법(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NEPA)을 제정하고 1970년 12월에는 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를 발족시킴으로써 환경영책과 환경행정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으며, 1970년 대기정화법(The Clear Air Act) 제 304조에 시민소송제도를 명문화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실질적으로 대처하였다. 최근 미국은 기업들이 환경훼손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환경피해구제에 엄격하다. 이처럼 환경피해의 구제를 철저히 하거나 환경범죄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제반 환경오염문제 대책수립에 간접적인 압력수단으로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일찍이 공해분쟁처리법(1970)이 시행되면서 공해분쟁처리방식으로 알선, 조정, 중재, 재정, 공해민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폐기물관련 외국입법례는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시사하는데 그 예를 들면, 독일환경청은 1994년부터 각종 전자제품의 제조업자와 판매상이 소비자들이 버리는 전자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 처리하도록 하는 환경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있다.³⁾ 또한 독일은 90년대 중반까지 포장물쓰레기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액체상품을 담는 용기에 예탁금제도를 실시하여 판매자, 제조업자들이 이를 재수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골판지,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 포장지를 태우는 대형 소각로의 건설을 금지하였다.⁴⁾ 덴마크에서는 1회용 컵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시애틀시에서는 1981년부터 쓰레기 1통 단위로 폐기비용을 징수한 결과 쓰레기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쓰레기 한통 단위에 무게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장되고 있다.⁵⁾ 미국의 8개 주정부는 포장물질속의 유독성금속을 줄이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소각시 유독물질의 방출을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과 일부 유럽국가들도 수은전지와 플라스틱제품의 소각을 금지시켰거나 분리처리하는 것을 입법화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1990년 자원보전 및 회복에 관한 법률(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 RCRA)을 개정하면서 원료개발에 대한 세금부과 조항을 삽입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형법개정안에 환경사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한 바 있고, 최근 법무부에서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내년 2월 입법예고키로 방침을 정하고

3) 한국 92. 2. 27, 6면.

4) 특집 '쓰레기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평화와 환경, 1992년 봄호, 31면.

5) 서울 92. 8. 10, 1면.

있다. 이는 지난해 대구지역 폐놀사건의 피해구제과정에서 현행의 법제도가 사후구제에 거의 무방비적이었던 경험을 반성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문제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서서히 누적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사후구제보다 사전적 예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에 관한 개별입법화추진은 물론 국민참가절차보장,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시기, 사후관리제도의 확대를 꾀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환경기준과 규제기준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장래에 기업체 등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기준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농도규제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양적규제기준으로 변환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른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하여 기준을 검토·재정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적극참여와 국민의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환경문제와 전문기술의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처의 확대개편 및 권한강화를 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은 경청할 만하다.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 분 야 | 대한민국현행법령집해당항목 |
|-----------------|--|
| 憲 政 |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
| 統一·外 交 · 國 防 |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
| 內 務 · 地 方 行 政 |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
| 社 會 · 文 化 · 敎 育 |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
| 產 業 · 經 濟 |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채·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
| 農 林 · 水 產 |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
| 建 設 |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
| 科學技術·交 通 · 遞 信 |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
| 環 境 · 保 健 |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
| 法 院 · 法 務 |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8민사법 |

1. 최근입법의견 목록

(1992. 8. 11 — 1992. 9. 10)

◎ 憲政 45

- 대통령선거법에 관한 의견

◎ 統一·外交·國防 45

- 병역법 및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창군 및 6·25 참전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의견
-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內務·地方行政 47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민방위제도개선지침
 보고사무정비지침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조례안
- 시의회의 권한 범위에 관한 의견(통반 설치조례 및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안)
- 지방자치법에 관한 의견(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지방개발기금 설치에 관한 법 제정안
-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단속권 및 상수도요금 결정권에 관한 의견
- 지방세과세지침 개정안

◎ 社會·文化·教育 50

- 고용관련 법 시행에 따른 의견
 고령자 고용 촉진 법 시행에 따른 행정지침

남녀고용평등법시행에 따른 행정지침

- ILO 조약비준에 따른 국내노동법 개정의견
-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업무에 관한 의견
- 산업재해에 관한 의견
 -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법률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영화진흥법에 관한 제정의견
- 교육관계법에 관한 개정의견
-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개정의견(교육감선출방식)
- 「반박보도청구권」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의견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에 관한 의견

◎ 產 業 · 經 濟 57

- 에너지사용규제에 관한 의견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
- 약관규제관련법
 - 약관규제에 관한법률 개정안
 - 금융기관의 보증계약서 약관 수정
 - 신용카드약관 개정
 - 콘도약관에 관한 의견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및 의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 및 의견
- 세법 개정안 및 의견
 - 소득세법 개정안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 관세법 개정안
- 영업비밀보호제도시행에 따른 의견

◎ 農 林 · 水 產 65

- 농지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 建 設 66

- 국토이용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 지하공간개발법에 관한 제정의견
- 건축사법 개정안

◎ 科學技術·交通·遞信 68

- 반도체칩보호법(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정안
- 철도공사법 개정안
- 항공법시행령 개정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발신자번호확인서비스 도입여부)

◎ 環 境·保 健 70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및 의견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 정신보건법 개정안
- 시체해부보존법에 관한 개정의견
- 의료법 개정안
- 결핵예방법 개정안

◎ 法 院·法 務 74

- 변호사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2. 최근입법의견 요지

(1992. 8. 11 — 1992. 9. 10)

○ 憲政

○ 대통령선거법에 관한 의견

- 기존 선거법은 공정성만을 강조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해 왔으므로 ① 선거권 있는 모든 개인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부여, ②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유세확대, ③ TV·라디오 토론회의 법정화, ④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비용공개 및 감시담당, ⑤ 군부재자투표시 영외투표를 원칙, ⑥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법개정 청원을 제출함(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금품제공행위·정부의 관권개입·각 정당 후보자의 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 기부하는 행위로 추정되는 모든 행위는 위법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 언론의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국민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보도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중대사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65조는 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한 위헌조항이므로 헌법소원을 냄(한국신문편집인협회).
- : 국민 92.8.12., 18면; 한국 92.8.12., 2면; 한겨레 92.8.18., 14면; 조선 92.8.28.,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8면) 및 제2호(41~42면) 참조

○ 統一·外交·國防

○ 병역법 및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 ①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 등 병역처분에 대해 재처분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병역심판위원회」를 설치; ② 부의 사망·부모가 60세 이상·2대 이상의 독자인 경우는 현역병으로 입영하되 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③ 전·공상자 가족중 1인과 본인의 입영으

로 가족의 부양이 어려운 경우는 현역입영을 면제, ④ 수입개방에 따른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민후계자들의 특례보충역 편입제도 신설, ⑤ 산업체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이미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해 기능요원특례보충역의 복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근로조건·작업환경 등이 열악한 분야의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함(병무청).

· 한국 92.8.18., 21면; 서울 92.8.26., 18면; 조선 92.8.26., 22면; 한겨레 92.8.26., 14면; 한국 92.8.26., 2면; 한국 92.8.27.,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 43면 참조

○ 창군및 6·25참전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및 의견

- 예산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창군참여자 및 한국전쟁참전자들에 대한 예우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기본연금 이내에서 매달 특별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창군및 6·25참전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함(국가보훈처).
- 6·25 전쟁은 전국민이 고통을 겪은 시기였는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참전군인에게만 특별대우를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시민).
- 6·25 참전하사관 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그에 앞서 독립운동을 하고도 보훈대상에서 빠진 대통령 포상·표창자들을 연금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순리인 바, 국가보훈의 기본정신을 되살린 합리적인 보훈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류홍수, 광복회 사무국장).
- 각 시도 지부장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촉구하는 집회를 통해 강력히 대응키로 함(대한파월유공전우회).
- 우리들도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에서 6·25 참전군인들에게 뒤지지 않고, 또한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고엽제피해 등 전쟁후유증에 시달리는 진정한 피해자들이므로 월남전 참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와야 할 것임(황명철, 파월유공전우회 부회장).
-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여 똑같이 싸운 상황에서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과 사병을 구분해 국가유공자대우를 하겠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이규항, 6·25 참전용사).
- ① 창군참여자 뿐만 아니라 6·25 참전군인의 경우, 당연히 사병이 절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자를 하사관(중사)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고, ② 예산면에서도 막대하게 소요될 뿐

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대선을 앞둔 선심용정책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참전연금제도」의 입법화를 서둘기보다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또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보훈대상자에서 빠진 독립운동에 공이 있는 대통령 포상·표창자들을 연금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한겨레 사설).

: 서울 92. 8. 20., 2면; 한겨레 92. 8. 27., 15면; 한겨레 92. 8. 28., 2면

○ 군사기밀보호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군사기밀보호법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확충·군사기밀의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량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알권리 확충부분(제2조·제9조·제10조)의 경우, 가장 중요한 군사기밀의 개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보 전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지만 신설된 군사기밀의 실질적 보호장치부분(제6조·제13조·제21조)은 언론통제를 노린 「독소조항」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검토가 요망됨(김상온, 국민일보 기자).
- 군사기밀보호법개정안은 종래 군기법의 비민주적인 틀을 과감히 벗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내용면에서도 실제 운영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밀지정과 해제에 대한 합리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방의 실상을 모르면 군사기밀을 보호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없음을 유념할 때, 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함(전문가).

: 국민 92. 8. 12.,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 43면 참조

○ 内 務 · 地 方 行 政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안

- 결혼·장례식 등의 절차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관·기업체의 단체명의의 부고와 굴건제복의 착용 및 만장의 사용을 계속 규제토록 하되, ① 청첩장에 의한 하객초청 금지, ② 화환·화분 등 장식물의 사용과 중여의 금지, ③ 담례품 중정행위의 금지, ④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제공 금지조항들은 삭제하거나 현실화하면서 형식에 그치고 있는

가정의례준칙의 보급과 실천을 위해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강화·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안』을 검토함(정부·민자당).

- 결혼식장·장례식장·장의사·결혼상담소 등 가정의례업소의 요금을 자율화 하고자 가정의례업소의 요금을 신고가격으로 전환하고, 의례업소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나누어 계약 할 수 있는 「표준공통계약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검토함(보사부).
- : 서울 92.8.16., 2면; 조선 92.8.16., 2면; 국민 92.8.31., 18면; 조선 92.8.31., 23면; 서울 92.9.1., 17면; 한겨레 92.9.1., 14면

○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민방위제도개선지침

- 현행 민방위제도는 공습경보시 승차자들이 하차하여 골목 또는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게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승객의 불편 및 교통혼잡이 야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차상태에서 민방위훈련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훈련도 현행 15일에서 전후 2~3일간의 여유(13일~18일사이)를 두어 각 직장 및 민방위대장이 자율적으로 실시도록 함(내무부).

보고사무정비지침

-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기업의 보고의무 가운데 법적 근거가 없거나 활용실적이 없는 보고·단순 현황파악을 위한 보고·유사증복된 보고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정비 및 통폐합하고, 기업체에 대해 불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보고를 요구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기타기관은 반드시 기관장의 결재를 걸쳐야 가능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시행여부는 사무관리감사를 통해 정기점검하도록 함(총무처).
- : 서울 92.8.20., 19면; 한국 92.8.20., 22면; 조선 92.8.30., 2면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안

- 서울시의회의 임승후의원 등 21명은 서울시내 전역의 중·고등학교와 학원 및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하고, 이미 설치된 담배자동판기는 3개

월간의 경과기간이 지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함(서울시의회).

: 국민 92.8.27., 17면; 한국 92.8.27.,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 50면 참조

○ 시의회의 권한범위에 관한 의견(통반설치조례 및 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

- 목포시의회가 시의원의 합의하에 통장 및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1992.11.25)하자 목포시장이 재심요청을 하였으나 시의회가 1991년 12월27일에 동일내용의 조례를 재의결함으로써 목포시장의 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됨.
 - 목포시의회가 통장과 동정자문위원을 해당지역의 시의원과 합의하여 통장이 위촉토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법이 규정한 의원의 권한 밖의 일이며,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과 전혀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한 것으로서 부당함(대법원).
- : 한국 92.8.22., 23면

○ 지방자치법에 관한 의견(지방자치단체장선거)

-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조치는 ① 연내에 선거를 치를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한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②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이 출마예정자인지의 여부도 인정키 어렵고, ③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 또한 선거를 치를 경우 당선될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유예한 것에 불과할 뿐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은 각하되어야 함(이동호 내무부장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정부의견서』).

: 국민 92.9.1.,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9~40면) 및 제2호(43~44면) 참조

○ 지방개발기금설치에 관한법 제정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출연금과 전입금 및 차입금, 채권발행 등으로 매년 1조원씩 모두 3조원 규모의 지방재정기금을 설치, 자치단체에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내용의 『지방개발기금설치에 관한법안』을 마련함(정부·민자당).

: 서울 92.9.3., 2면

○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단속권 및 상수도요금결정권에 관한 의견

-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계절적인 수요를 틈타 나타나는 유통·창고업자들의 매점매석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원가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물가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임(경제기획원).
- 『맑은 물』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예정이었던 상수도요금결정권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정부).
: 서울 92. 9. 9., 6면

○ 지방세과세지침 개정안

- 서민용으로 지어진 다가구주택(적용대상은 가구별 면적이 25.7평)의 재산세를 현행보다 40~50% 감면시켜 줌으로써 전·월세값의 상승을 막아 무주택서민들의 집세부담을 덜어 주고, 임대용 소형주택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과세지침개정안』을 마련함(내무부).
: 국민 92. 9. 1., 18면

○ 社會·文化·教育

○ 고용관련법시행에 따른 의견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에 따른 행정지침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취업확대방안의 하나로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있어서 고령자에 적합한 ① 매표·검표원, ② 주유원, ③ 민원상담원, ④ 주차장관리원, ⑤ 검침원(전기·가스·수도), ⑥ 건물일반관리원, ⑦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⑧ 수금원, ⑨ 기숙사사감, ⑩ 공원관리원, ⑪ 실내환경미화원, ⑫ 안내·수위, ⑬ 교통정리원, ⑭ 식물재배원, ⑮ 조경관리원, ⑯ 건널목(터널·교량)관리원, ⑰ 선별원, ⑱ 단순검사원, ⑲ 일반포장원, ⑳ 일반노무원 등의 20개 직종분야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결원을 충원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50세 이상인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함(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시행에 따른 행정지침

- 근로자 모집광고에 있어서 남녀평등기회를 주지 않은 사례, 즉 ① 남자사원만 모집, ② 관리직 남자·판매직 여자 모집, ③ 여성의 경우 만 미혼 등 제한적인 조건을 부가한 경우, ④ 학력·경력 등 자격이 동일한 상황에서 직종·직위의 차별을 두는 모집방법에 대하여 중앙 일간지 12종과 지방지 33종을 지방노동관서별로 지정하여 법위반사항에 관하여 1차 시정지시에 이어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함(노동부).
: 국민 92.8.15., 17면; 서울 92.8.15., 18면; 한겨례 92.8.15., 14면; 서울 92.8.29., 18면; 조선 92.8.29., 22면; 국민 92.9.9., 2면

○ ILO 조약비준에 따른 국내노동법 개정의견

- 국제노동기구(ILO)에 정식가입한 정부는 강제근로에 관한 조약(제29호) 등 10여개 조약을 우선 검토 대상조약으로 설정하고, 외무부·보사부·해운항만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업 및 상업부분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제122호)」·「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제73호)」 등 3개의 조약을 올해 안으로 비준키로 함(노동부).
- 정부가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노동법을 개정 치 않아도 되는 3개의 조약만 비준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노동법규정이 노동기구의 기준에 미달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해 조약비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임(김봉석, 노총 국제국장).
- 노동기구의 핵심정신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제87호)」의 비준을 미루면서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3개의 조약만 비준키로 결정한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노동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외교적 체면만 유지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함(전노협).
: 한겨례 92.8.11., 1면

○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업무에 관한 의견

- 현재 공공직업훈련이 내무·교육·체육청소년·농림수산·보사·노동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실시됨에 따라 훈련효율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훈련생들도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자동차정비·컴퓨터 등 서비스 관련업종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공공직업훈련은 노동부로 일원화함과 아울러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농어촌직업훈련은 노동부가 통합관리하되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직업훈련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각각 맡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정부).

- 비진학 청소년의 유류인력을 활용하고, 중·고교생들에게 올바른 진로결정과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성·흥미·신체조건 등 개인의 조건에 따른 진로 및 직업정보를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전문적으로 제공해 주는 「직업지도전산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함(노동부).
- 사설직업안내소가 난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직종수가 61개에 이르러 전문화가 어려운 상황이라『직업소개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직업안내소의 허가직종수를 10개 안팎으로 줄이고,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사무직·생산직 등 업종별이나 유사직종을 묶어서 허가하며, 기존 직업안내소에 대해서는 간신히가기준을 강화하여 3년마다 간신히가기를 내줄 때 직업소개실적을 엄격히 심사하여 소개실적이 저조한 직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불허할 예정임(노동부).
: 서울 92.8.22., 18면; 한국 92.8.22., 8면; 서울 92.8.24., 19면; 서울 92.8.27., 17면

○ 산업재해에 관한 의견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법률 개정안

-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재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회사통근버스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산재보상법」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을 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료비와 요양급여(월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치료후 재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함(한국노총).
- 공무원 및 군인·경찰·사립학교교원 등은 관계법에 의해 통근때 입은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준하는 법적 보상을 받는 반면, 근로자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임(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사망이나 동일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요양일수와 관계없이 재해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하여 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법인과 현장소장만 처벌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등 사업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마련함(노동부).
- 정부의 산업재해감소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단속과 아울러 산업재해사고 및 사범, 특히 업주와 근로감독관 등의 유착관계·구조적인 비리 등에 대해 체계적인 수사와 단속을 하고자 일선 지검과 지청에 산업재해전담검사를 두는 「산업재해전담검사제」를 도입함(대검찰청).
-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의무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 ① 안전관리자 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사업장 규모기준을 종업원 「1천인이상에게 5천인이상으로」, ② 근로자의 건강상담과 직업병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업체기준을 「50인이상에서 2백인이상으로」 완화하고, 2백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업무는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마련함(노동부).
- : 서울 92.8.14., 19면; 조선 92.8.14., 22면; 한국 92.8.24., 22면; 서울 92.8.29., 19면; 한국 92.8.29., 23면; 서울 92.8.31., 19면

○ 영화진흥법에 관한 제정의견

- 현행 문화부의 영화업등록 및 그 취소권한을 상공부로 이관, 영화의 등급을 4등급(어린이가·중학생가·고교생가·성년가)으로 두되 영화 윤리위원회가 심의,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원으로 개편하면서 영화정책연구소·영상자료원을 산하기관으로 설치, 한국영화의 의무상영 일을 명문화,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영화업 등록의무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영화진흥법안(현행「영화법」을 일부개정하여 본법안으로 흡수)』을 한국영화인협회의 정책위원회가 마련했으나 사회단체 및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한국영화인협회는 기존 법안내용중 영화업 등록부처를 문화부로 하고, 영화등급심의의 구분을 「11불가(12세 미만 불가)·14불가(15세미만 불가)·17불가(18세미만 불가) 등」으로 수정한 법안을 마련함(한국영화인협회).

-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문화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정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함(유동훈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영화진흥법제정과 한국영화 발전을 토론하는 정당초청공청회(1992.8.31)」).
 - 「구로아리랑」 및 「부활의 노래」에서와 같이 공륜의 지나친 규제는 부당함으로 검열제도의 지속에 반대함(고명석 민주당 전문위원, 「영화 진흥법제정과 한국영화발전을 토론하는 정당초청공청회(1992.8.31)」).
 - 영화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을 정권예속성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함으로 검열제도의 지속에는 반대함(유종열 국민당 정책5실장, 「영화진흥법제정과 한국영화발전을 토론하는 정당초청공청회(1992.8.31)」).
 - 「구로아리랑」은 당시 노사대립이 침체하던 시절이었고, 「부활의 노래」는 광주운동의 아픔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이었으므로 작품의 공개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및 군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관하여 삭제함(공연윤리위원회, 유인물자료 『영화검열의 폐지와 자율등급심의제 토의에 관한 의견』, 「영화진흥법제정과 한국영화발전을 토론하는 정당초청공청회(1992.8.31)」).
 - 현행 영화법의 기본이 되는 규제를 풀고, 영화의 지원책을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한 영협이 마련한 영화진흥법안의 「영화진흥원」의 구성을 민주적으로 하여야 영화산업의 발전과 예술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게 됨(김형태 변호사, 「영화진흥법제정과 한국영화발전을 토론하는 정당초청공청회(1992.8.31)」).
- 서울 92.9.2., 10면; 한겨레 92.9.2., 9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 46면(영화법 개정의견) 참조

○ 교육관계법에 관한 개정의견

- 사립학교법·교육법 등 현행 교육관계법은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크게 침해하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며, ① 재단이사장이 갖고 있는 교수임면권을 총·학장에게, ② 민주적 학사운영을 위해 교무회의·교수회의를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화, ③ 해임·재임용탈락 교수의 복직과 시간강사의 지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정이 필요함(교육관계법개정을 위한 교육주체공동대책위원회).
- 현행 교육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계법은 대학자치의 실현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재의 획일적인 대학통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학정원 및 입학방법의 자율화, 학칙인가권의 폐지 등이 필요하고, 교수회의 등이 학내의 최고의사결정기구화 되어야

하며, 현행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정치활동금지·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금지 조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함(신현직 계명대교수, 『대학교육관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관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1992. 8. 20)」).

- 대학시간강사는 법률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너무 낮아 생계를 위해 전공과 무관한 번역·아르바이트 심지어 막노동까지 할 수밖에 없어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정이 시급함(문성호 성균관대강사, 『교육관계법 개정 방향과 대학강사』, 「교육관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1992. 8. 20)」).

○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개정의견(교육감선출방식)

- 현행 교육감선출과정은 입후보등록절차없이 비공개적으로 선거가 진행되어 후보물망자들이 은밀히 교육위원들을 만나는 등 불필요한 잡음과 과열현상이 있으므로 교육자치의 취지에 비추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방식의 법제도개선이 시급함(이준해, 서울교육감).
- 현행 교육감선출방식에 대해 「후보자등록제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제」 도입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주장함(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회,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세미나(1992. 8. 29)」).
- 교육위원회가 후보등록이나 추천 없이 비공개적으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은 각계의 의견수렴이 어렵고 선거권자인 교육위원이 스스로 교육감으로 선출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라는 교육자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교육감입후보자의 「사전등록제 및 교육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일정 후보의 추천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선출방안」이 모색되어야 함(김태완 계명대교수, 『교육감의 위상 및 선출방법』,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세미나(1992. 8. 29)」).
- 현행 교육위원회의 선출방식은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중 시·도 의회가 선출하는 이중간선이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선거과열과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① 기초의회 추천없이 광역의회에서 선출, ② 기초의회에서 선출, ③ 일부는 기초의원중, 나머지는 광역의회에서 선출, ④ 주민직선의 4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이기우 인하대교수, 『교육위원회의 자격 및 선출방식』,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세미나(1992. 8. 29)」).
- : 경향 92. 8. 21., 21면; 한겨례 92. 8. 21., 14면; 한겨례 92. 8. 22., 12면; 세계 92. 8. 27., 21면; 서울 92. 8. 30., 15면; 조선 92. 8. 30., 1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43면 참조

○ 「반박보도청구권」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의견

- 현재 정기간행물법 등의 일부에 산재되어 있는 반론권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반박보도청구등에관한법률(가칭)」의 형태로 단일법을 제정해야 하고, 본법에는 ① 반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행사기간, ② 반박보도문의 내용 및 작성방법, ③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야 함(양삼승,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 반론권제도에 관한 단일법을 만들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체계 및 그 내용을 정비하고, 반론권제도의 명칭은 「반박보도청구권(약칭 반박권)」으로 고치며, 현행 언론중재제도는 강제적인 분쟁해결권한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중재가 성립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결정을 하고 일정기간내 이의의 제기가 없을 때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이의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법원제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중재권」을 인정해야 하고, 경찰 및 검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한 사항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인정해야 함(양삼승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언론중재위원회주최 세미나(1992.8.26)).
- : 한국 92.8.28., 21면

○ 박물관및미술관진홍법 개정에 관한 의견

- 국민의 문화예술향수권을 높이고자 개인이나 기업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세제혜택과 지원을 규정한 『박물관및미술관진홍법』의 일부규정이 원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어 개정이 시급함.
- 소장품의 전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면서 소장품의 크기·연대·재질 등 체계적인 정리를 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하므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 것이다 오는 12월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 활발할 것임(문화부).
- 기관·휴관일수를 규정하는 등 내부규정이 까다롭고, 세제혜택의 경우에도 상속세는 면세가 아니라 유예이며, 땅과 건물을 제외한 소장작품에만 면세규정을 둘으로써 실혜택이 없기 때문에 규제인상이 짙은 몇몇 조항은 개정이 필요함(정준모,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 국민 92.8.19., 13면

○ 產業·經濟

○ 에너지사용규제에 관한 의견

-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축건물에 한하여 임대용건물은 임대구획별로 전기·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하고, 오피스텔은 자동제어설비를 구비시켜 에너지를 자동계량하면서 전원을 자동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환기·통풍을 위해 창문은 손으로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합과 아울러 빙축열냉방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시키고, 건물의 단위면적당 냉난방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양을 지역별·규모별로 규정하여 건축설계시 이 기준을 지키도록 규제하는 「건물의 냉난방부하상한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가전업계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냉장고와 승용차(9월 1일 시행)·조명기기(10월 1일 시행)·에어컨(내년 1월 1일 시행)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표시제」를 시행함(동자부).

: 한국 92.8.11., 6면; 한국 92.8.19.,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 46면 참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현재는 제조시설면적과 사무실·기숙사 등 부대시설면적을 합하여 건축면적이 200m² 이상인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공장용지내에 허게실·목욕탕 등 종업원복지시설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① 수도권·부산시 등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의 종업원복지시설 건축은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시켜 허가 없이 가능토록 하고, ② 기타지역에서는 종업원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사무실·창고까지도 공장면적과 관계없이 가능토록 하며, ③ 과다한 공장용지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규정한 기준초과용지의 범위도 공장대지면적의 10% 이내, 3,000m²(약 900평) 이상일 경우의 3,000m²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④ 일체의 공장 신·증설이 금지된 수도권에서도 동일한 건축면적의 범위내에서는 기존 공장의 일부 중·개축이나 기계설비의 추가설치를 허용하며, ⑤ 의류제조업을 수도권내 이전허용업종으로 추가지정하여 주거지역에서 의류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발갑피 등 신발재

단물과 부속품의 제조업을 도시형업종으로 분류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경제장관회의).

: 한국 92.8.15.,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50면 참조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

-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무부가 잠정적인 체류인정조치를 취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체류인정 또는 고용주의 확인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소득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상용·문화·공무·유학 등의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을 넘는 해외체류자에 대한 체제비에 있어서도 현재 유학생에게만 인정되던 동반가족 추가경비를 일반인에게도 1인당 5백달러로 추가허용하며, 유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대학 이하는 1천달러·대학원은 1천5백달러」로 되어 있던 것을 모두 2천달러로 상향조정하면서 가족동반시에는 1인당 5백달러를 추가할 수 있도록 『외국환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

: 국민 92.8.14., 17면; 서울 92.8.12., 18면; 서울 92.8.14., 7면; 한겨레 92.8.14., 6면; 한국 92.8.14., 6면; 조선 92.9.2.,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 49면 참조

○ 약관규제관련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

- 개별업체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약관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해 온 관행을 없애고, 약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경제기획원의 시정권고조치가 부당약관규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제정하되, 「약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② 시정권고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명령제도로 전환하며, ③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당국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함(경제기획원).

금융기관의 보증계약서 약관 수정

- 최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한 후, 연대보증인에게 균등부담하자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현행 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은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로운 보증계약서 약관을 마련함(은행감독원).

신용카드약관 개정

- 카드소지자 및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하고, 세금이나 수수료를 피하고자 다른 업소의 이름을 이용하여 전표를 끊는 행위 및 카드를 이용한 불법고리대금업의 거래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①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 1~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폐지, ② 필수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다른 점포에서 발급된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회원이 대금지급을 거절, ③ 20만원 이상의 할부품목에 이상이 있을 경우만 구입을 취소할 수 있던 것을 7일 이내에 구입상품을 되돌려 주면 환불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부구매뒤 구입상품에 이상이 생기면 나머지 할부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갖도록 하여 카드소지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대출기간에 따라 차동화하면서 카드사는 이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가입자들에게 매달 알려줘야 할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약관」을 개정함(재무부).

콘도약관에 관한 의견

- 콘도의 회원가입약관과 관련하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공정성이 없으며, 또한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명시해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교통부).
- 콘도시설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월단위로 10%를 가산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자제한법(연25%)의 이자율을 초과하고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상 어쩔 수 없이 이용제한을 실시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문구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항임(교통부).
- 경제기획원이 무효판결을 내린 「계약해제에 대해 회원권자에게 통고 절차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가능하다.」·「회원들의 의사와는 무관

하게 콘도미니엄업체가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은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아 조속한 시정을 위해 해당 시·도에 지시를 내림(교통부).

- : 서울 92.8.15., 17면; 한국 92.8.15., 22면; 서울 92.8.22., 7면; 한국 92.8.22., 8면; 서울 92.8.30., 7면; 조선 92.8.30., 7면; 한겨례 92.8.30., 7면; 서울 92.9.4., 6면; 조선 92.9.4., 11면; 한겨례 92.9.4., 7면; 한국 92.9.4., 6면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및 의견

- 소비자보호원에 상품의 품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잘못 이용하면 소비로 생명이나 재산상의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① 특정내용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광고의 매체 및 회수 · 시간 · 비용 등에 대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광고의 내용 등에 제한을 가하고, 사업자가 표시 · 광고의 준수기준을 위반하면 현행 수거 · 파기명령외에 기준준수명령과 행위중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며 불응할 경우에는 현행 「1년이하의 징역 ·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제품명 · 용량 · 허가번호 · 원산지 등의 표시의무를 부여하면서 시 · 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마련함(경제기획원).
-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는 했으나 「소비자단체소송권리」규정이 흡수되지 못했고, 의료 · 금융분야의 소비자피해를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보장으로서는 미흡함(김미경, 한겨례 기자).
-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은 이미 공정거래법 등의 개별법에서 과장 · 허위 · 과대광고 등에 대한 규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광고행위를 일일이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보호차원을 떠난 중복 · 과잉규제 행위임(한국광고단체연합회).
- 소비자보호법은 기본법으로서 공정거래법 · 향정신성의약품법 등의 개별법이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 불과할 뿐이지 별도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경제기획원).

서울 92.8.25., 9면; 한겨례 92.8.25., 7면; 한겨례 92.8.28., 8면; 조선 92.9.6., 6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의견

- 30대 재벌그룹 계열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오는 1997년 4월 1일까지 5년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재계의 반발이 심하여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재벌계열사들의 상호지급보증 규모를 자기자본의 200%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자 재계의 백지화 주장이 나오게 됨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1992년 8월 28일 「재벌그룹 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 규제를 오는 1996년 3월 말까지 자기자본의 200% 수준으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함.
- 업종별로 지보한도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보한도를 늘이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공정거래위원회).
- 제2금융권의 상호지급보증총액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보증한도를 일률적으로 자기자본의 100%로 정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공중거래법에는 지급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여 여신총액과 담보총액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지급보증한도는 더 늘어나야 할 것임(재무부).
- 상호보증축소한도를 일률적으로 자기자본의 100%로 규정하면 빚이 많든 적든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부채비율이 200% 이내인 기업은 상호보증한도를 200% 이내로, 부채비율이 200~300%인 기업은 130% 이내로,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기업만 상호보증한도를 100%로 규정하는 차등적용안이 타당함(상공부).
- 지급보증자체가 국내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금융관행에서 생긴 문제인데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편의주의에 따른 정부의 잘못된 발상임(최창남, 전경련 부회장).
-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상호지급보증 규모를 100%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공청회에서 상공회의소 및 전경련 등 재계가 200%로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함에 따라 적절히 수용하여 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임(최각규 부총리, 『기자간담회(1992.8.20)』).
- 일본에서는 계열기업 간 상호출자로 기업결속을 강화하고 유망한 사업분야의 신규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에 대출의

필수조건인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하면 투자여력이 크게 위축되어 부당함(이재옹, 한국화약그룹 이사).

- 비주력업종에 대한 여신제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조치는 계속 늘었지만 종소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한 실정이므로 상호지보규제조치는 정책금융을 확대시킬 뿐 종소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당함(전대주, 전경련 상무).
- 재벌그룹계열사들간의 상호 빚보증이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배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는 타당함(경제기획원).
- 상호지보의 범제화가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상호지보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재벌그룹의 고유관행이므로 부당하고, 상호지보의 직접행위자는 은행인데 왜 기업만 규제하려느냐는 주장도 상호지보규제를 통해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잘못된 대출관행 및 대기업편중여신을 바꾸려는 정부의 의지이므로 전경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최병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기업이 품질·가격·사업성외에 계열그룹의 지보능력과 금융기관의 수용태세로 평가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행위로서 충분히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됨(박유광,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왜곡된 금융관행을 바로잡고자 정부가 상호지급보증의 규모와 내용을 규제하려고 나선 것은 타당한 일이며, 그 규제를 공정거래법에 포함시켜 범제화하려는 시도는 정당하므로 국민경제의 체질을 고치는 이런 실속 있는 일은 적극 추진하기 바람(한겨레 사설).
- 최근 전경련 등 재계가 상호지급보증규제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재벌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시정하고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지보규제는 불가피하므로, 재벌그룹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 규제를 오는 96년 3월 말까지 자기자본의 200% 수준으로 하려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함(최각규 부총리, 『기자회견(1992. 8. 28)』).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상호지급보증축소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경제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합의이므로 적극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함(장재식,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 : 세계 92.8.11., 7면; 조선 92.8.14., 6면; 한겨레 92.8.14., 7면; 국민 92.8.21., 7면; 경향 92.8.21., 7면; 서울 92.8.21., 7면; 한겨레 92.8.22., 7면; 동아 92.8.27., 7면; 조선 92.8.27., 6면; 조선

92.8.28., 7면; 한겨례 92.8.27., 3면; 한겨례 92.8.28., 2면; 서울
92.8.29., 7면; 한국 92.8.29., 7면; 한겨례 92.8.30.,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7~48면) 및 제2호(47~48면) 참조

○ 세법 개정안 및 의견

- 봉급생활자의 높은 조세부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자금난 및 인력 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경영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재산 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주세 등을 제외하고,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함(재무부, 『92년도 세법개정안』).
- 이번의 세율체계개선으로 월급여 100만원의 근로자는 실제로 내는 세금이 약 32%, 150만원의 근로자는 33.6%, 200만원의 근로자는 32.6%의 경감혜택을 받게 됨(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
- 근로소득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경감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세수확보가 되지 않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및 각종 복지사업·국가정책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안병선, 국민일보 기자).
- 세제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을 피한 미봉적인 손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시설확충이니 복리후생증진이니 하면서 재정자금이 부족하다고 버릇처럼 얘기하던 정부가 일방적인 세금경감을 골자로 하는 세금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대선을 겨냥한 선심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강조해 온 형평·균형정책의 강화의지와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에도 어긋남으로 세금경감조치와 아울러 최소한 형평부분에서의 세제강화조치를 취해 세제개편의 모양새를 갖추어야만 했음(이백만, 한국일보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

- ① 근로소득공제한도(490만원에서 600만원으로)·전액공제한도(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기초공제한도(48만원에서 60만원으로)를 상향 조정하고, ② 소득세율체계(5단계에서 6단계로)를 늘려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누진율을 완화시키며 산출세액의 20%한도에서 50만원까지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연간급여 3,600만원 이하의 모든 근로소득자로 확대시킴과 아울러 ③ 동거 노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공제하도록 하며 맞벌이 주부근로자에 대해서도 배우자공제혜택을 주고, 보험료공제한도(연24만원에서 50만원으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 『92년도 세법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 중소제조업의 금년도 사업실적분부터 2년간에 대하여 ① 법인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연간과세소득 1억원 이하분에 대해 40%, 1억원 초과분에 대해 20%를, ② 개인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연간과세소득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40%,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0%를 각각 조세감면해 주도록 하고,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연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절차를 생략시킴과 아울러 원천징수하지 않는 금액을 「100만원미만에서 500만원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92년도 세법개정안』).
- : 국민 92.9.2., 1면; 국민 92.9.2., 6면; 서울 92.9.3., 1면; 서울 92.9.3., 3면; 조선 92.9.3., 1면; 한겨레 92.9.3., 1면; 한국 92.9.3., 1면; 한국 92.9.3., 6면; 한국 92.9.3., 7면

○ 관세법 개정안

-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중 수출품에 대해서 통관시 받는 세관의 모든 통제를 폐지(① 수출품의 제조전 수출신고 허용·② 보세구역 등에서의 장치의무 폐지·③ 보세운송통로지정 및 보세운송물품 발송도착확인제 폐지 등)하고, 수입통관의 경우도 수입물품의 세관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한 입항전 수입신고제와 세금납부없이 담보의 제공만으로 수입물품의 반출이 허용되는 사후납부제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하며,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대비하여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농산물의 관세율을 최고 1,600%까지 높여 국내농가를 보호하고, 특정품목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에 발동하는 긴급관세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관세인상범위(기본세율에 40%로 가산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의『관세법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93년도 관세법개정계획』).
- : 국민 92.9.9., 7면; 서울 92.9.9., 7면; 한국 92.9.9., 1면; 한국 92.9.9., 7면

○ 영업비밀보호제도시행에 따른 의견

- 대부분의 기업들이 1991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영업비밀보호제도를 인지하여 영업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판단됨으로 오는 12월 15일부터 기업의 임·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각종 기술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비밀을 이용한 업체 등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이나 비밀사용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영업비밀보호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내에 신설하여 시행함(특허청).

: 국민 92.9.8., 18면; 서울 92.9.8.,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 48면 참조

○ 農林·水產

○ 농지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의 농업목적 활용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① 경자의 범위를 개인가족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형태의 농민 조직까지, 유전을 소유권설정이외의 장기임차권보유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② 투기목적으로 불법전용된 농토자원을 생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소유권 상한선을 20ha 이상으로 확대 · 영농희망자의 신규 농지구입을 위한 제도와 실제영농여부의 엄격한 감시제도 마련 · 협동조합 등 농민단체의 소유권인정 및 현재 「1ha이하 5인이상」으로 되어 있는 영농조합을 「5ha이하 2인이상」으로 완화해야 함(김동희 단국대학교수, 민자당주최 『농지제도개선토론회』).
- 현재 비농민의 농지취득요건인 「농지소재지 6개월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유능한 농민의 영농참여를 촉진시키고, 기술농업시대에 대비한 농업시험 · 연구목적으로 농지취득을 희망하는 민간업계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이 허용돼야 하며, 또한 농업자재생산에 필요한 농지취득도 인정돼야 함(최양부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민자당주최 『농지제도개선토론회』).
-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정부가 고시한 지역의 한계농지를 비농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를 영농규모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임대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함(서원호 농협조사부장, 민자당주최 『농지제도개선토론회』).
- 농지소유규제를 전면완화해서는 곤란하므로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하고, 농지전용규제는 대폭완화하되 농협의 유통 · 가공시설 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전면개방해야 함과 아울러 그린벨트도 재조정하여 불합리한 곳은 풀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의 행위제한은 완화해야 함(성기윤 신북단위농협장, 민자당주최 『농지제도개선토론회』).

-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일치되어야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지의 생산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농지소유자격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어서는 안됨(주봉규 서울대교수, 민자당주최 『농지제도개선토론회』)
: 서울 92. 8. 27., 4면

○ 建 設

○ 국토이용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전 국토를 도시지역·취락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경기지역·산림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역·유보지역 등의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지정된 목적에 따라 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허용행위의 폭이 좁다는 비판이 있어 용도지역중 취락·공업·관광휴양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흡수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용도지역을 5~6개로 줄이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함(정부·민자당).
-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사후관리장치의 미비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형식적인 규제에 그치고 있어 사전가격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① 토지거래허가제의 심사기준을 바꾸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 토지취득을 가능하도록 하고, ② 토지거래허가때 제출한 토지이용목적대로 활용 치 않고 방치한 토지를 유 휴지로 규정하여 종합토지세는 5%,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75%의 세율을 물리며, ③ 토지이용의 무기간인 2~5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다시 내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발동하여 강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야 매매증명제와 토지거래허가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임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개발용도전환이나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만 다시 허가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조항을 개정함(건설부).
- 중소기업과 개별공장을 건립할 때에 부지에 편입되는 농지 또는 초지의 점유비율을 현행 50%이내에서 70%이내로 확대허용하고, 농공단지에 대한 농지·초지의 편입비율제한은 철폐하며, 경지·산림보전·자

연환경보전지역내의 기준 주택이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의 공공 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도 농어가주택이 아닐지라도 1,500m²(454평)한도 이내에서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이용 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 서울 92.8.16., 1면; 한국 92.8.16., 2면; 서울 92.9.1., 6면; 서울 92.9.8., 7면; 조선 92.9.8., 11면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현행 개발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부과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도시구역내의 개발이익 발생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에 「현행 3,300m²(약 1,000평)이상에서 1,650m²(500평)이상의 토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정부).
- : 국민 92.8.13., 17면; 서울 92.8.14., 2면

○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절토·성토·정지작업을 하려면 관할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현행 규정을 최소 대지면적 27평 이상일 때 허가대상이 되도록 하고, 다만 27평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높이 50cm 미만의 범위에서 절토·성토 등의 작업을 한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 서울 92.8.21., 7면; 한국 92.8.21., 6면

○ 지하공간개발법에 관한 제정의견

- 도시지역의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공간개발의 지원책과 보상기준 및 개발계획수립방안을 규정한 「지하공간개발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함(정부).
- 우리나라 도시의 지하공간이용은 건물의 지하층·지하도·지하상가 등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어 지하이용계획이나 개발절차·지원방안·보상기준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마련 뿐만 아니라 기술연구도 필요한 데, 현재 지하개발에 따른 보상문제는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여 지하개발로 인한 지상소유권자의 피해는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보상토록 했으나 사유지의 지하공간을 공공 또는 공익시설용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의 개발에 따른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

므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의 깊이와는 무관하게 필지당 일정액을 지상권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이동성 건설부 도시국장, 국토개발연구원주최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

: 서울 92.8.27.,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 53면 참조

○ 건축사법 개정안

-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면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부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민간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건축사가 맡고 있는 설계와 감리기능을 분리하여 현행 감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감리협회가 감리회사의 자본금·건축사보유숫자·실적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공사규모에 맞춰 감리자를 순번제로 배정하는 대신에 감리비용을 현실에 맞게 올리고, 부실한 시공이나 감리가 드러나면 감리자의 면허취소와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한 『건축사법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서울 92.8.30., 7면

◎ 科學技術·交通·遞信

○ 반도체칩보호법(반도체칩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정안

- 지적재산권소유자는 반도체칩을 이용해 최종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에 대하여 반도체칩의 로얄티를 청구할 수 있고, 반도체가 불법제조된 줄 모르고 구입한 선의의 구매자에 대하여는 이용료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나 선의의 구매자가 불법제조된 반도체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일정한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칩보호법』을 마련함(상공부).

: 서울 92.8.27., 6면; 한겨레 92.8.27., 6면

○ 철도공사법 개정안

- 현행 철도공사법의 부칙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철도청을 국영기업체인 공사로 전환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준비태세가 미흡하여 철도청을 공사화할 경우에 현 철도청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지급 등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

철도청의 공사화시기를 늦추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내용의 『철도공사법개정안』을 마련함(교통부).

: 한국 92.8.20., 23면

○ 항공법시행령 개정안

- 항공기의 기종별 소음정도를 1~5등급으로 분류하여 항공기가 착륙할 때 착륙료의 10~30%에 해당하는 소음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항공기등록규정도 완화하여 군·세관·경찰 등 국가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킴과 아울러 레저 및 스포츠 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무동력비행장치와 낙하산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정부).

: 한국 92.8.18., 22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 자동차증가와 도로확충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1981년에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손질이 불가피한 데다 현행법에서 처벌대상을 좁게 한정해 운전자의 교통사고방지의식을 약화시켜온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사고유형으로서 신호위반사고·중앙선침범사고·제한속도 위반사고·추월금지구역에서의 추월사고·전널목일단정지 무시사고·횡단보도사고·무면허 및 면허정지사고·음주운전사고 등 현행 8개에서 ① 인도돌진사고, ② 개문발차사고, ③ 무면허증기조종사고, ④ 식물인간 등 사망에 버금가는 중상해사고 등의 4개조항을 추가하여 총 12개조항으로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도 현재 덤프트럭 등 중기의 일부였던 것을 모든 중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을 마련함(법무부).

: 한겨례 92.8.11., 14면; 한국 92.8.11., 22면

○ 전기통신사업법(발신자번호확인서비스 도입여부)

- 체신부는 최근 「발신자번호확인서비스」의 시행을 놓고, 통신비밀침해라는 반론이 일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폭력·음란전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화에 대해서는 수신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발신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우선 오는 10월부터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이 장치를 시

협가동한 뒤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늦어도 내년초부터 정식서비스에 포함시킬 예정이고, 또한 서비스시행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시행지역에서는 발신번호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관계법령의 개정을 검토함.

- 법률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에는 발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되고, 발신인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2항과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발신자가 갖는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이 한도내에서 제한된다. 다만 「발신자번호확인서비스」의 남용 내지 부작용에 의해 발신자의 사생활침해 등 다른 법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요건 및 절차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히 함으로써 사생활침해를 예방해야 함(법무부, 『발신자번호확인서비스의 통신비밀침해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 한국 92.8.13., 23면; 한겨례 92.8.18.,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54면 참조

◎ 環境·保健

○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 의견

- 폐기물발생을 줄이고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며, ② 국민은 재활용품의 우선 구매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고, ③ 사업자는 생산과정에서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업종·제품별로 자원재활용업종·제1종지정제품·제2종지정제품·지정부산물 등 4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④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해서 금융·세제지원을 명문화함과 아울러 현행 「폐기물회수비용예치금제」를 개선하여 우유팩·일회용품 등의 유통체계상 회수가 어려운 제품에 대해 「처리비용부담금제」를 신설·적용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환경처).

- 처리비용부담금제는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음(환경처).
 -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① 종이·타이어·고철·알루미늄 캔·폐유·유연탄재 등의 재생원료를 직접사용한 1차제품 40개 품목과 이를 가공한 2차제품 24개 품목을 KS규격화하고, ② 상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포장의 적정기준과 표준치수·상품별 포장규격 등과 시험·측정방식 등 130여개 사항도 규격화할 예정임(공업진흥청,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생제품 KS규격화 방안』).
 - 제조업체들이 상품제조 때 고철·폐지 등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의 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제조상품의 「재생여부 표시제」를 도입하며, 내년부터 쓰레기분리수거를 단독주택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그 재활용품을 원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대폭 경감해 주기로 함(내무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상반기 평가보고회』).
- : 한겨례 92.8.18., 6면; 서울 92.8.29., 19면; 조선 92.8.29., 23면; 서울 92.9.4., 18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 55면 참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 현행 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기관을 배제한 가운데 환경처에 직접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승인내용과 영향평가협의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① 사업승인기관이 평가서를 우선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한 뒤에 환경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최종검토과정에서도 사업자·환경처·사업승인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② 사업의 입지여건·특성 등을 감안해 환경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해 집중평가하도록 하는 중점평가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사업자가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아 주변환경에 큰 피해를 준 경우는 공사를 중단케 하며 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경우에는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안」을 마련함(환경처).
- : 서울 92.9.1., 2면; 서울 92.9.10., 18면; 한국 92.9.10., 22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 유독물운반사고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운반차량에 유독물방제요령카드와 보호복 등 2인용 이상의 방제장비비치를 의무화하고, 유독물질 관리자는 유독물관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점검내용과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지도감독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의무화하며, 유독물수입품목 등록절차에 있어서 성분 및 함량이 동일한 유독물의 경우에는 연1회 최초의 수입시에만 품목 등록을 하도록 간소화하고,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실적보고의무도 종전 반기별보고에서 연1회로 완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함(환경처).

: 국민 92. 9. 8., 17면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 대규모 공업단지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치할 때는 자체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과 아울러 주변지역의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일정 규모 미만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은 신고없이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함(환경처).

: 서울 92. 9. 4., 17면

○ 정신보건법 개정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신보건법안을 마련했으나 「강제입원조항」에 대한 일부 법조계·종교계의 반대에 부딪쳐 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강제입원규정의 악용을 막기 위해 「평 가입원제」와 「가퇴원제」외에 「부당입원심사제」를 도입하고, ②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입원환자도 퇴원청구를 할 수 있고, ③ 정신질환경력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기타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며, ④ 환자에 대해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환자에 관련된 비밀과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특수치료시술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

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정신보건법안』을 마련함(보사부).

: 국민 92.9.8., 17면; 한겨례 92.9.8., 14면; 한국 92.9.8., 23면; 세계 92.8.19.,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55면; 『정신보건법의 입법방향』, 현안분석 제2호(본원의 부정기간행물) 참조

○ 시체해부보존법에 관한 개정의견

- 무연고시체의 공급이 최근 급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의 시체손상을 꺼리는 인습과 민원발생소지를 염려한 각 구청의 의대해부용시체공급에 대한 소극적 자세 때문에 각 의과대학의 해부용시체구입이 어려워져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저하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시체해부보존법』을 개정하여 각 구청은 의과대학에 무연고시체에 관련된 정보를 통지하고, 의과대학장의 무연고시체의 제공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야 함(교육용시체수급위원회).

: 한국 92.8.29., 21면

○ 의료법 개정안

- ① 현재 의료기관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일반의료수가를 보사부장관의 고시가격으로 일원화하고, ② 양·한방 의료기관간에 상호 필요한 진료과목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양의사와 한의사가 일정기간 수련을 받으면 기초분야의 경우에 양·한방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종합병원규모를 현행 8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의학과의 설치를 의무화 하며, ④ 치과치료조무사 및 한방간호조무사제를 도입하고, ⑤ 전문응급인력인 응급구조사제를 신설하는 한편,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진료방해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며, ⑥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정명령 등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반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함(보사부).

: 국민 92.9.5., 19면; 서울 92.9.5., 19면; 한겨레 92.9.5., 14면; 한국
92.9.5., 23면

○ 결핵예방법 개정안

- 신생아 결핵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50만원의 과태료, 보호자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결핵환자일지라도 전염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기점검 등의 관리를 하도록 하고, 결핵환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환자의 발생·사망보고에 대한 의무자를 담당의사에서 담당의료 기관장으로 격상시키는『결핵예방법개정안』을 마련함(보사부).
- : 서울 92.8.27., 18면

○ 法院·法務

○ 변호사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법무부의 변호사법개정안 가운데 변호사가 형사입건되었을 경우,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법무부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확정판결전까지의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며, 공무원법과 비교할 때도 형평에 맞지 않음(대법원).
- 법무부의 개정안 내용중 ① 변호사가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법무부가 징계하고, 다른 가벼운 사안일 때에는 변협이 징계하도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이원화한 것은 불합리하며, ② 형사입건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함(대한변호사협회).
- 지금까지 변호사징계사유의 대부분이 회칙위반·품위손상 등 경미한 사안들이었고, 변호사징계권을 변호사단체가 완벽하게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법무사·변리사 등 다른 단체들에 대한 징계권도 여전히 주무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민주화를 위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법무부).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기부 등 수사기관이 이를 무시하는 등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횡포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의원입법형식으로 현행 변호사법에 「변호인접견방해죄」를 신설해 줄 것을 청원함(대한변호사협회).

: 한겨례 92.8.12., 14면; 한국 92.8.12., 22면; 한국 92.8.20., 21면; 국
민 92.9.8., 19면; 조선 92.9.9.,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 58면 참조

II. 최신법령 목록

(1992. 8. 11. — 1992. 10. 20)

| 공포번호 | 전명 | 공포연월일 |
|------|--|--------------|
| 조약 | 1100 대한민국정부와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여권및관용여권에대한사증의상호면제에관한각서 | 1992. 8. 31 |
| | 1101 제21차만국우편총회개최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만국우편연합간의협정 | 1992. 9. 18 |
| | 1102 대한민국정부와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정부간의대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외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 1992. 9. 24 |
| | 1103 대한민국정부와오스트레일리아정부간의상용복수사증발급에관한각서 | 1992. 9. 24 |
| | 1105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총영사관설치에관한의정서 | 1992. 10. 10 |
| | 1106 대한민국정부와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사증발급에관한양해각서 | 1992. 10. 15 |
| | | |
| 대통령령 | 13707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 1992. 8. 11 |
| | 13708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 1992. 8. 13 |
| | 13709 동물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개정령 | 1992. 8. 17 |
| | 13710 항공법시행령개정령 | 1992. 8. 17 |
| | 13711 항공기등록령개정령 | 1992. 8. 17 |
| | 13712 인삼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 1992. 8. 22 |
| | 13713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 1992. 8. 22 |
| | 13714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 1992. 8. 22 |
| | 13415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 1992. 8. 22 |
| | 13416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 1992. 9. 22 |
| | 13417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 1992. 8. 22 |
| | 1341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1992. 8. 25 |
| | 13419 중소기업사업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 | 1992. 9. 31 |

| 공포번호 | 건명 | 공포연월일 |
|------|---------------------------------------|--------------|
| 대통령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개정령 | 1992. 8. 31 |
|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중개정령 | 1992. 8. 31 |
| | 동력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개정령 | 1992. 8. 31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개정령 | 1992. 8. 31 |
| | 자연환경 보전법 시행령 | 1992. 8. 31 |
| |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개정령 | 1992. 9. 4 |
| | 우편 환법 시행령 중개정령 | 1992. 9. 14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개정령 | 1992. 9. 17 |
| | 국제 금융 기구에 의거한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정령 | 1992. 9. 17 |
| | 해외 이주 법 시행령 중개정령 | 1992. 9. 22 |
| | 비상기획위원회 규정 중개정령 | 1992. 9. 22 |
| |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정령 | 1992. 9. 26 |
| | 행정 규제 완화 위원회 규정 중개정령 | 1992. 9. 30 |
| | 소방 공무원 징계령 중개정령 | 1992. 10. 1 |
| |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 중개정령 | 1992. 10. 1 |
| | 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 중개정령 | 1992. 10. 1 |
| | 특수 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 | 1992. 10. 1 |
| | 경륜 · 경정 법 시행령 | 1992. 10. 1 |
| 총리령 | 한국 인구 보건 연구 원 법 시행령 중개정령 | 1992. 10. 1 |
| | 소득 세법 시행령 중개정령 | 1992. 10. 7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중개정령 | 1992. 10. 17 |
| | 발전 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정령 | 1992. 10. 19 |
| | 자연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 1992. 8. 31 |
| 외무부령 | 오수 ·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중개정령 | 1992. 9. 28 |
| | 종합 유선 방송 법 시행 규칙 | 1992. 9. 28 |
| | 공무원 연금 법 시행 규칙 중개정령 | 1992. 9. 30 |
| | 임시 외교 또는 영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개정령 | 1992. 9. 4 |
| 내무부령 | 해외 이주 법 시행 규칙 중개정령 | 1992. 9. 22 |
| | 선박 안전 조업 규칙 중개정령 | 1992. 9. 5 |

| 공포번호 | 건명 | 공포연월일 |
|-------------|--|--------------|
| 내무부령 572 | 소방법시행규칙개정령 | 1992. 9. 19 |
| 재무부령 1891 |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8. 25 |
| 1892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8. 25 |
| 1893 |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중개정령 | 1992. 9. 1 |
| 1894 | 신탁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9. 9 |
| 1895 | 관세법제28조의규정에의한첨단기술산업및방위산업의관세경감대상업종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 1992. 9. 22 |
| 법무부령 364 | 공증인서류보전규칙중개정령 | 1992. 9. 14 |
| 국방부령 432 |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8. 20 |
| 433 |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 1992. 9. 5 |
| 434 |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9. 30 |
| 교육부령 618 |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 1992. 8. 14 |
| 619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 1992. 9. 3 |
| 620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 1992. 9. 3 |
| 621 |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중개정령 | 1992. 9. 15 |
| 622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개정령 | 1992. 10. 1 |
| 623 | 장학위원회에관한규칙폐지령 | 1992. 10. 5 |
| 농림수산부령 1104 |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 1992. 9. 5 |
| 1105 | 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10. 1 |
| 1106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10. 2 |
| 1107 | 동물약품등취급규칙개정령 | 1992. 10. 13 |
| 상공부령 782 | 계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9. 5 |
| 건설부령 512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9. 3 |
| 513 |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9. 5 |
| 514 | 공동주택관리규칙중개정령 | 1992. 10. 9 |
| 보건사회부령 893 | 국립검역소소속식품검사소의명칭·위치및관한구역에관한규칙 | 1992. 8. 13 |

| 공포번호 | 건명 | 공포연월일 |
|--------|-------------------------------|--------------|
| 보건사회부령 | 894 환경보전법시행규칙폐지령중개정령 | 1992. 9. 1 |
| | 895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10. 20 |
| 교통부령 | 984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2. 9. 5 |
| | 985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 1992. 9. 5 |
| 체신부령 | 986 자동차운수규칙중개정령 | 1992. 9. 7 |
| | 846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중개정령 | 1992. 9. 21 |
| 체신부령 | 847 전산망보급확장파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1992. 10. 7 |
| | 848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 한규칙 | 1992. 10. 14 |
| | 849 체신관서조체급사무취급규칙폐지령 | 1992. 10. 19 |
| | 850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 | 1992. 10. 19 |

국내입법의견조사(환경문제관련 입법의견) 제3호

1992年 10月 28日 印刷
1992年 10月 29日 發行

發行人 李世薰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한국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원 1,200원

